

정책연구 2012-6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2012 Global Leader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체계	5
제2장 지방영향평가의 요건분석	7
제1절 지방영향평가의 의의	9
1. 지방영향평가의 개념	9
2. 유사제도와 개념비교	12
3. 지방영향평가의 활용목적	14
제2절 지방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	16
1. 도입 필요성 검토구조	16
2. 도입 필요성 판단요소 검토	17
3. 도입 필요성 검토결과	20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검토요건	21
1. 선행연구의 분석	21
2. 도입의 검토요건	26
제3장 지방영향평가의 실태분석	29
제1절 실태분석의 구조	31
제2절 관련제도의 실태분석	32



1. 지방4대 협의체	32
2.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35
3.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	36
4. 지방재정부담심의	41
제3절 관련제도의 한계분석	46
1. 제도적 검토요소 분석	46
2. 운영적 검토요소 분석	49
제4장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51
제1절 분석설계	53
1. 분석목적	53
2. 분석대상	53
3. 분석방법	54
제2절 국내 유사제도의 사례	55
1. 교통영향평가	55
2. 규제영향평가	58
3. 균형발전영향평가	61
4. 기술영향평가	66
5. 부패영향평가	69
6. 성별영향평가	73
7. 인구영향평가	76
8. 재해영향평가	81
9. 환경영향평가	85
제3절 외국 유사제도의 사례	91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91
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94
3.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	101
제4절 유사제도의 분석결과	108
1. 분석결과의 종합	108
2. 사례분석의 시사점	110
제5장 국가정책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	113
제1절 대안설계의 원칙과 전략	115
1. 대안설계의 원칙	115
2. 대안설계의 전략	116
제2절 평가체제의 설계	117
1. 평가목적 설계	117
2. 평가대상 설계	120
3. 평가지표 설계	128
4. 평가방법 설계	135
제3절 운영체제의 설계	139
1. 평가주체 설계	139
2. 평가절차 설계	143
3. 근거법령 설계	147
참고문헌	154
부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제출현황	155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정책평가의 유형과 평가요소	10
<표 2-2> 유사제도의 개념규정	13
<표 2-3> 국가정책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사례	18
<표 2-4> “(가칭)지방영향평가”관련 기존연구	19
<표 2-5>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	21
<표 2-6>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연구내용	22
<표 2-7> 지방분권 영향평가제도 연구내용	23
<표 2-8>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 연구내용	24
<표 2-9> 기존연구의 내용구조 비교	25
<표 2-10>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검토요소	27
<표 3-1>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33
<표 3-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제출 현황	34
<표 3-3> 행정안전부 법령안심사 규정	37
<표 3-4> 행정안전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기준	39
<표 3-5> 타부처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기준	40
<표 3-6> 훈령·예규안의 입안 및 심사기준	40
<표 3-7>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42
<표 3-8> 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규정	42
<표 3-9> 제2차 재정부담심의의 심의대상	45
<표 3-10> 관련제도별 제도적 검토기준 비교	47
<표 3-11> 관련제도의 제도적 한계	49
<표 3-12> 관련제도별 운영적 검토기준 비교	50



<표 4-1> 규제영향평가지표	59
<표 4-2>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59
<표 4-3> 균형발전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예시)	62
<표 4-4> 3가지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	63
<표 4-5> 사업별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예시)	64
<표 4-6> 균형영향발전평가단 구성방향	64
<표 4-7> 기술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67
<표 4-8> 중점평가법령	69
<표 4-9>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지표	70
<표 4-10>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기구와 기능	71
<표 4-11> 성별영향평가 대상(예시)	73
<표 4-12>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	74
<표 4-13>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77
<표 4-14>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81
<표 4-1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88
<표 4-16> 일본 환경정책분야의 주요 동향	95
<표 4-17> 일본의 조례규정 대상사업 예시	95
<표 4-18>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99
<표 4-19> 일본의 환경영향 평가항목	101
<표 4-20> 국내사례의 분석결과 종합	108
<표 4-21> 외국사례의 분석결과 종합	110
<표 4-22> 사례분석의 시사점	111
<표 5-1> 대안설계의 원칙	116

<표 5-2> 대안설계의 전략 117

<표 5-3> 평가목적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119

<표 5-4> 평가대상 대안의 유형 121

<표 5-5> 평가대상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123

<표 5-6> (가칭)지방영향평가 측정지표 127

<표 5-7> 평가지표의 구성 134

<표 5-8> 평가방법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137

<표 5-9> 평가주체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141

<표 5-10> 평가업무지원기구 설치방안 142

<표 5-11> 평가절차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145

<표 5-12> 근거법령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149

<표 5-1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51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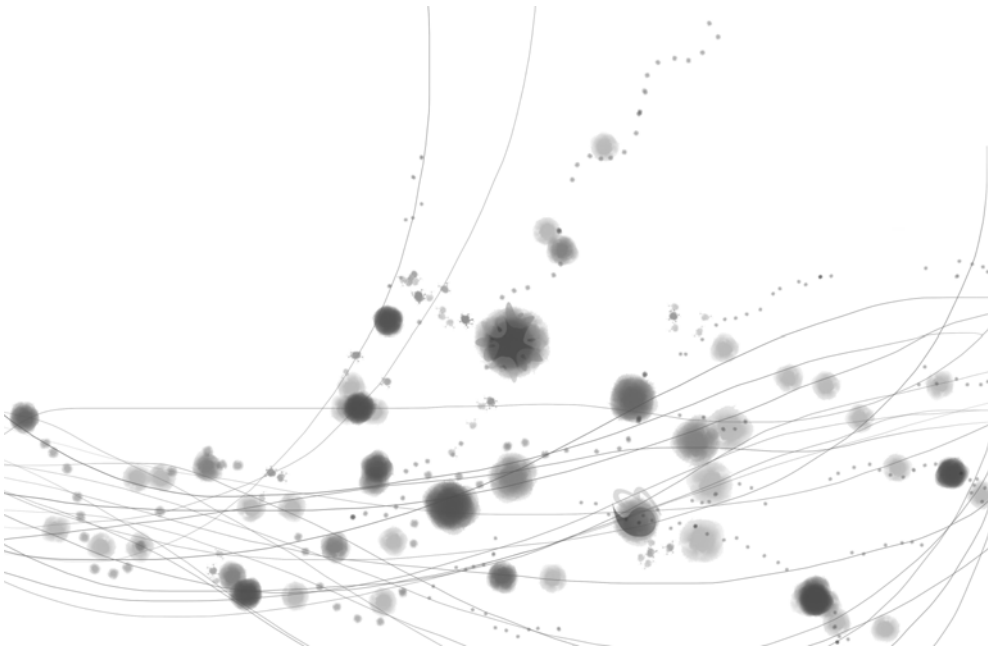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6
[그림 2-1] 정책과정의 영향평가	9
[그림 2-2] 지방영향평가의 개념	11
[그림 2-3] 유사제도별 개념구조 비교	14
[그림 2-4] 각종 영향평가의 활용목적 구조	15
[그림 2-5] 지방영향평가의 활용목적	16
[그림 2-6] 정책도입의 필요구조	17
[그림 2-7] 정책평가의 기본체계	26
[그림 3-1] 유사제도 실태분석의 구조	32
[그림 4-1] 대상제도의 분석방법	54
[그림 4-2] 교통영향평가의 절차	57
[그림 4-3] 규제영향평가 절차	61
[그림 4-4] 균형발전영향평가 절차	65
[그림 4-5] 기술영향평가 절차	68
[그림 4-6] 부패영향평가 절차	72
[그림 4-7] 성별영향평가 절차	76
[그림 4-8] 인구영향평가의 절차	80
[그림 4-9] 재해영향평가의 절차	84
[그림 4-10]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90
[그림 4-1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93
[그림 4-1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98
[그림 4-13]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 개념도	102
[그림 4-14]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의 추진절차	106

[그림 5-1] 평가목적의 설계방안	120
[그림 5-2] 평가대상의 설계방안	125
[그림 5-3] (가칭)지방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26
[그림 5-4] 연역적·하향식 지표개발방법	129
[그림 5-5] 지방영향평가의 지표단계	130
[그림 5-6] 사업의 논리적 전개구조	130
[그림 5-7] 사업의 추진과정	131
[그림 5-8] 평가지표의 설계방안	135
[그림 5-9] 평가결과의 작성양식(예)	138
[그림 5-10] 평가방법의 설계방안	138
[그림 5-11] 평가주체의 설계방안	143
[그림 5-12] 평가절차의 설계방안	146
[그림 5-13] 평가절차(안)의 예시	147
[그림 5-14] 근거법령의 설계방안	150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상호간 협력 및 상생보다 대립 및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 특성을 간과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결정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많음
 - 즉, 중앙정부가 각종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즉, 행정안전부의 법령안심사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요소를 판단하고, “전국지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4단체와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제도들은 다양한 한계들로 인하여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임
 - 근본적으로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구조에 따른 중앙정부의 임의적 및 배려적 활용이 지배적이며, 국정참여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제한적이며, 국정참여의 방법도 정례적

이지 못하다는 평가임

-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기존제도의 실태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정책의(가칭) 지방영향평가”제도의 내용을 설계하며,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대상범위
 - 연구의 대상범위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포괄함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영향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 한 차별적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자를 포괄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시간범위
 - 연구의 기준연도는 2012년으로 하되, 목표연도는 2013년 이후로 설정함
 - 연구의 분석시점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하되, 정책대안의 실현과정에서 다수의 이해조정이나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목표시점은 2013년 이후로 탄력적 적용을 고려함

○ 내용범위

- “(가칭)지방영향평가”제도를 평가체제와 운영체제로 구분하여 양자 모두의 대안을 동시에 설계하는 연구에 초점을 둠
-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실태와 유사한 국내외의 영향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대안설계에 필요한 시사를 도출함

2. 연구의 방법

○ 분석내용에 따라서 문헌분석, 벤치마킹 및 브레인스토밍을 선별적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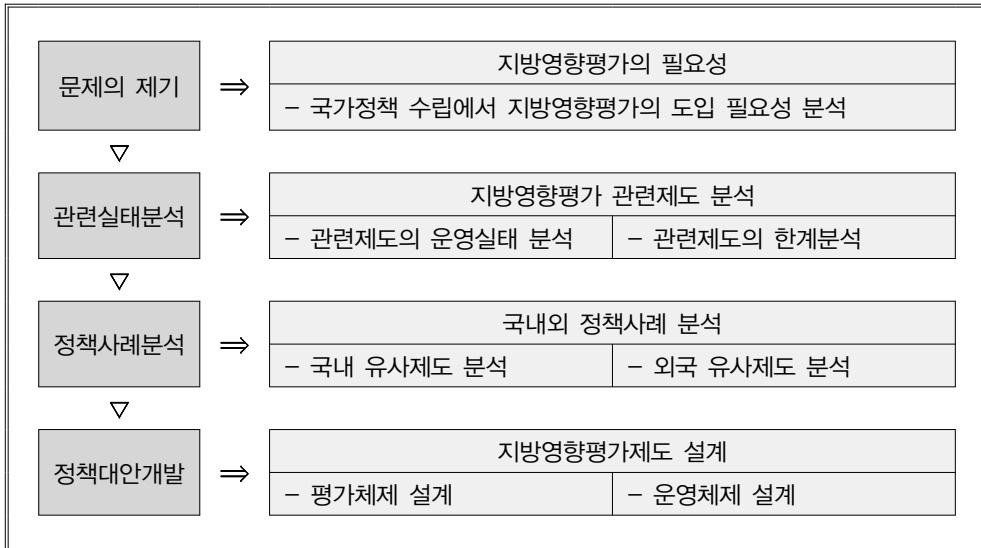
- 문헌분석 : 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활용목적 및 유사제도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각종 문헌을 활용함
- 벤치마킹 : 지방영향평가의 평가체제와 운영체제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함
- 브레인스토밍 : 지방영향평가의 평가체제와 운영체제의 시안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함

제3절 연구의 체계

○ 연구의 체계는 논의구조의 기본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즉, 국가정책의 수립에 따른 지방영향평가의 필요성 정립에 기초하여 현행제도의 실태분석과 한계도출, 국내외의 유사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으로 지방영향평가의 평가체제와 운영체제의 방안을 강구하는 논의구조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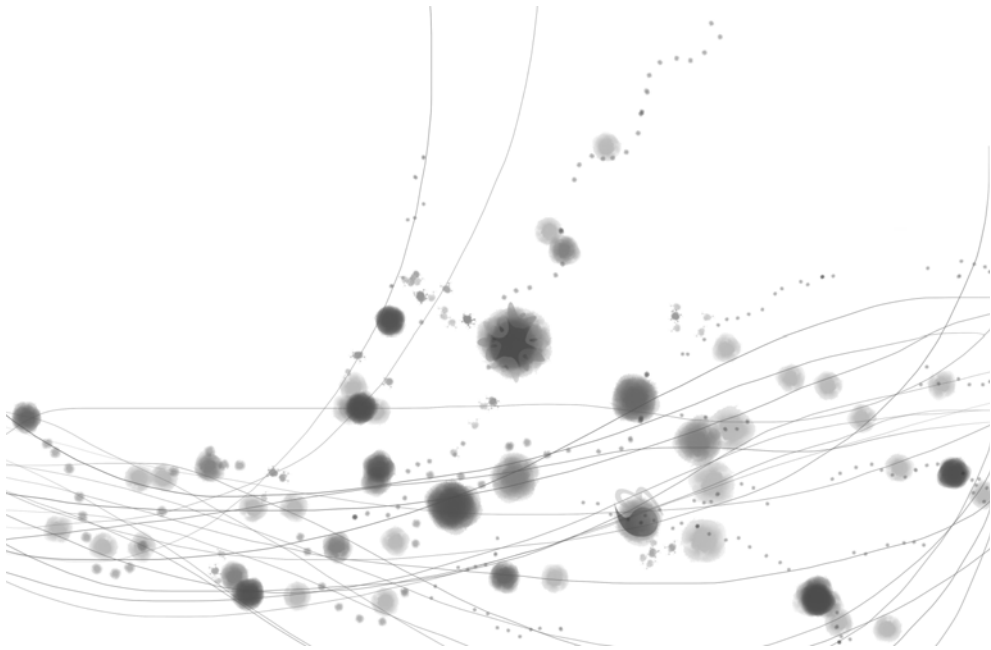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제 2 장

지방영향평가의 요건분석

- 제1절 지방영향평가의 의의
- 제2절 지방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
-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검토요건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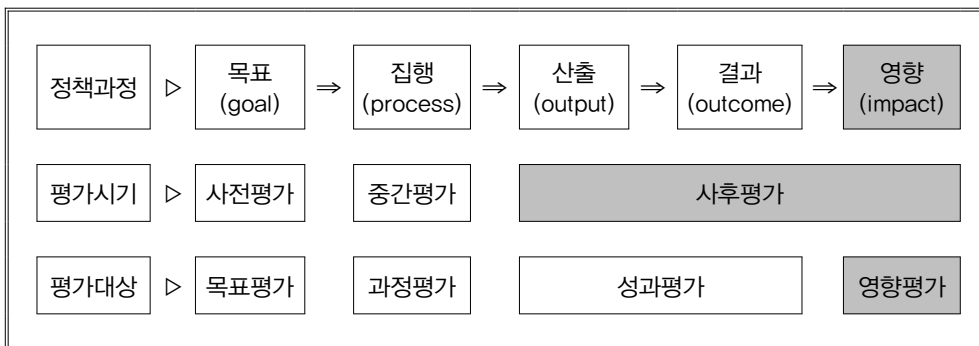
지방영향평가의 요건분석

제1절 지방영향평가의 의의

1. 지방영향평가의 개념

- 지방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는 정책적 목적에 기초한 용어로 이론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는 특정의 정책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한 주요 결과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정책과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후적 평가에 해당됨
 - 이에 비하여 정부정책으로 활용되는 각종의 영향평가는 특정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일종의 사전평가로 정책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그림 2-1> 정책과정의 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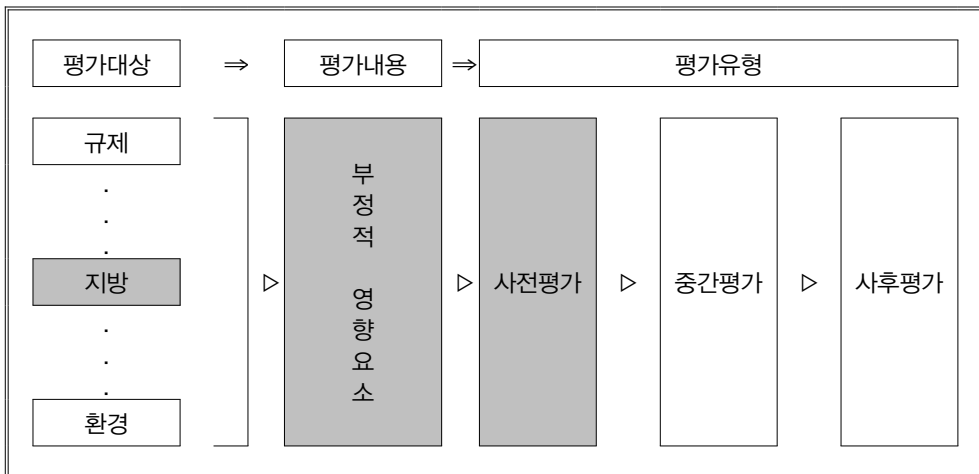
- 따라서 지방영향평가의 개념 역시 정부정책의 목적에 기초하여 조작적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기본적으로 영향평가의 개념이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전술의 논거를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지방영향평가가 정책적 목적에서 새로이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임
- 일반적으로 평가는 적용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나,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사전평가와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로 구분되고 있음(김병진, 2000)
 - 사전평가(Prospective Evaluation)는 정책의 채택이나 실시의 가부를 검토하거나 복수의 대안 중에서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고, 중간평가(Process Evaluation)는 계획대비 진행상황이나 달성상황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는 정책의 완료 후에 정책이 결과한 효과에 대해 측정하는 것을 말함

<표 2-1> 정책평가의 유형과 평가요소

유형	평가요소
사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파악 - 게임이론의 타당성 검증 - 비용 및 효율(Cost Performance)의 사전검증 - 평가지표의 결정과 수치목표의 결정 - 평가계획의 결정
중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치의 지속 수집(투입, 활동, 결과, 성과에 관한 평가지표치) - 투입, 활동, 결과에 관한 당초계획과 실적의 검토 - 필요한 게임이론의 타당성 재검증 - 필요한 중간비용 및 효율평가의 실시 - 개선제안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에 관한 수치목표의 달성여부 - 영향의 여부 - 비용 및 효율의 여부 - 결론 및 제언

- 이에 비하여 영향평가는 건설 및 건축 등의 인위적 개발이 자연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는 것을 말함(전재경, 1998)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서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에는 경관이나 재해 등이 포함되고, 환경에는 인구나 교통 등이 포함됨
- 전술한 평가의 시기기준의 유형과 영향평가의 정책적 개념에 근거하여 지방영향평가의 개념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즉, 지방영향평가는 특정의 국가정책에 의해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제도로 규정할 수 있음
 - 엄밀한 의미에서는 최적의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산출하고 예측하여 제안하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에 해당됨
 - 다만, 지방영향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지방”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정책목적을 반영하여 명확한 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그림 2-2> 지방영향평가의 개념



【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의 개념규정 】

■ 지방영향평가의 개념

- 법령과 제도가 “지방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예측·파악
- 포괄적으로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는 “투입요소로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제도의 도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
- 이때 투입요소는 법령, 제도, 조세, 재정투자 등 다양한 요소가 해당될 수 있으나, 법령과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에 초점을 둠

2. 유사제도와 개념비교

- 지방영향평가와 유사한 국내의 영향평가제도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이후 다수가 도입 및 운영되고 있음
 - 즉,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이 있음
-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는 관련법령별로 정책목적에 기초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및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기존에 법제화된 각종 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표 2-2> 유사제도의 개념규정

구 분	내 용
교통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함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함
성별영향평가 (여성발전기본법)	■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함
인구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재해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 지방영향평가와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를 평가대상과 평가내용 및 평가유형을 적용하여 개념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평가대상에서는 지방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이 각기 다르고, 평가내용과 평가유형은 동일한 개념구조를 보이고 있음
 - 물론, 평가내용의 경우 구체적 평가지표는 각종 영형평가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각 대상별로 해당분야의 부정적 영향요소를 도출하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즉, 평가대상은 각종 영향평가별로 지방, 교통, 규제, 기술, 성별, 인구, 재해, 환경 등으로 정책목적에 의해 구분되나, 평가내용은 각각의 평가대상별 부정적 영향요소를 파악하는 것에 있고, 평가유형은 시기를 기준으로 정책결정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영향평가별 차이가 없음

<그림 2-3> 유사제도별 개념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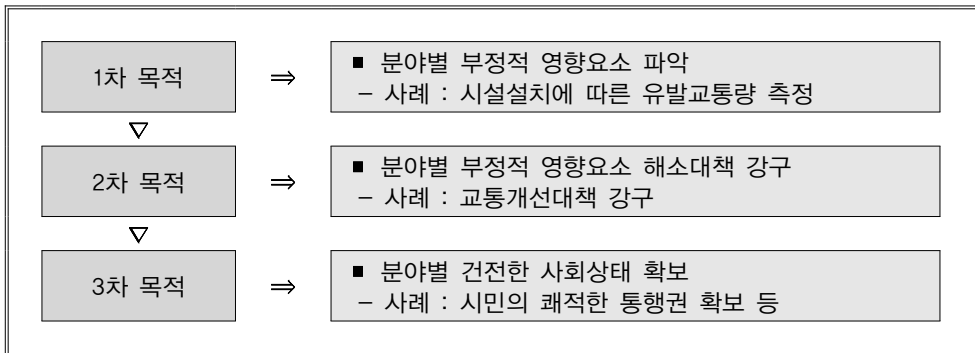


3. 지방영향평가의 활용목적

- 지방영향평가의 활용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타당한, 일반적인 영향평가제도의 활용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지방영향평가의 활용목적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향평가의 활용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의 활용목적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국토연구원, 2005)
 -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 및 분석하여 미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재해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여 재해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및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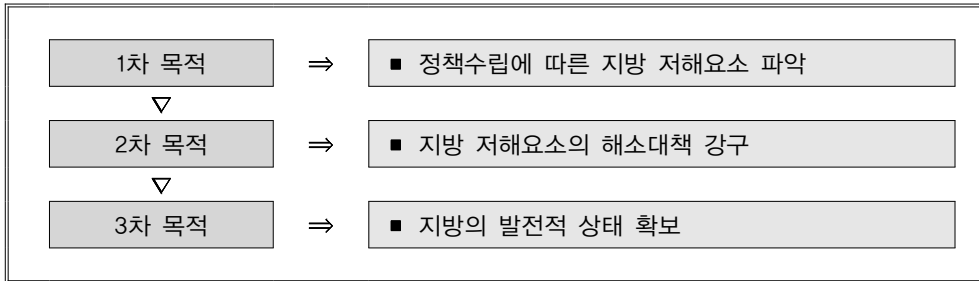
<그림 2-4> 각종 영향평가의 활용목적 구조



- 전술한 기존 영향평가의 활용목적에 비추어 보면, 지방영향평가의 활용목적도 정책적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 즉, 지방영향평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정책수립에서 지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를 파악하고, 2차적으로 부정적 영향요소의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3차적으로 지방의 발전적 상태를 확보하는 것임

-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요소는 전술한 개념규정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 내용으로, 이의 개념범위에 따라서 활용목적 역시 다소의 범위편차를 가지게 됨

<그림 2-5> 지방영향평가의 활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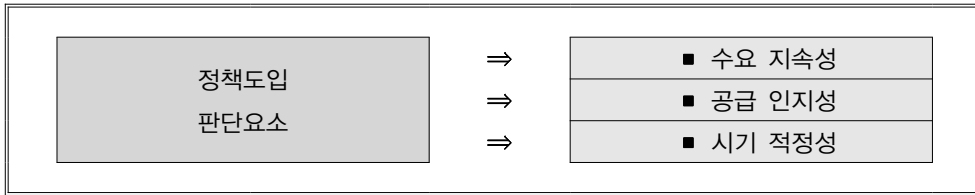


제2절 지방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

1. 도입 필요성 검토구조

- 일반적으로 사회의제나 정책의제가 공식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의 충족에 따른 것임
 - 즉,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정책의제를 둘러싼 수요 지속성과 공급 인지성 및 시기 적정성이 충족되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도 일종의 공식적 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전술한 요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라는 공식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그림 2-6> 정책도입의 필요구조



2. 도입 필요성 판단요소 검토

1) 수요 지속성 판단

- 수요 지속성은 특정의 정책의제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의 경우 동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의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임
- “(가칭)지방영향평가”와 관련된 수요로는 국가정책으로 중앙과 지방간에 정책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음
 - 국가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공식적 통계로 입증할 수는 없으나, 다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화도 핵폐기처리장 설치”와 “4대강 사업”을 들 수 있으나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갈등사례들이 발생되어 왔음

<표 2-3> 국가정책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사례

- 건교부·환경부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 재산권규제조치 철회
- 토지개발공사와 대전시 : 노은지구 개발과 보전
- 통상산업부와 강원도 : 폐광특별법 의견대립
- 해운항만청과 부산시 : 가덕도개발 의견대립
- 철도청과 수원시 : 수원민자역사건설 이견
- 토지개발공사와 성남시 : 구미동 하수처리장건설 반대
- 통상산업부와 전남 영광군 : 원전건설취소 갈등
- 환경부와 강원도 : 도내 개발사업 의견대립
- 내무부와 충청북도 : 속리산 용화온천개발 이견
- 환경부와 안동시 : 안동댐주변 관광개발 이견
- 해운항만청과 인천 중구 : 항만시설내 건물신축 이견
-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등 : 4대강 사업 의견대립
-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의견대립

- 전술한 국가정책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우선, 대부분의 갈등사례가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관점이 다르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다수의 갈등사례들이 구조적 반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감안하면, 국가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적 관점에서 민선 이후 현재까지 지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공급 인지성 판단

- 공급 인지성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특정의 정책의제에 대하여 대응주체인 정부가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함
 -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의 경우 동 정책을 통해서 전술한 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역할임
 - 행정안전부는 “(가칭)지방영향평가”와 관련된 정책대안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왔으며, 기획재정부도 균형발전과 관련된 유사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대응을 위한 기존의 제도들은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 대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표 2-4> “(가칭)지방영향평가”관련 기존연구

구분	내용
행정안전부	-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 영향평가 연구
기획재정부	-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와 같은 중앙부처의 기존연구를 감안하면, 공급 인지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의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즉,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 역시 현재시점에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3) 시기 적정성 판단

- 시기 적정성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특성의 정책의제를 공식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이 시기적으로 적정한가를 말하는 것임
 -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의 경우 현재적 시점이 정책도입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적정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시기의 적정성은 수요적 측면과 효용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수요적 측면에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정책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효용성 측면에서는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예방을 통해서 사회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정책도입의 시기에 관한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시기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즉, 수요적 측면과 효용성 측면에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은 정책대응의 시기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지불규모를 감안한다면,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도입 필요성 검토결과

- 전술한 검토요소들에 대한 판단결과를 종합하면,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간주됨
 - 즉,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에 따른 효율적 대응이 곤란하고, 시기적으로도 현재시점이 충분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정책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빈번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5>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

구 분	내 용
수요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주도의 획일적 국정정책 수립 - 중앙-지방간 갈등사례 빈발
공급 인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대응 필요성 인지 - 기존 제도의 효용 한계
시기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응의 제반여건 구비 - 수요제기 및 갈등비용 저감요구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검토요건

1. 선행연구의 분석

- 지방영향평가에 관한 기존연구는 여타 분야의 영향평가에 비해 비교적 소수에 불과함
 - 이는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치제도의 개선 및 보완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졌고, 나아가 여타 분야에 비하여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최근까지 지방영향평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005), 지방분권 영향평가 연구(2006) 및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2007) 등이 그것임
-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행정연구원)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영향평가의 타당성과 도입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임

- 동 연구는 기존의 각종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체제에서는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운영체제에서는 평가주체와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음

<표 2-6>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연구내용

구 분		내 용
평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사업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를 지역별 및 사업 특성별로 평가하여 사업의 입지선정,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사업의 결정 등에 활용하여 수도권외 과밀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평가체제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 평가 제외사업기준 이외의 모든 사업 - 계속사업 : 주요 R&D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따라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 R&D사업 :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추진방식 및 계획의 수정과 보완이 가능한 사업 - SOC사업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중 수도권내 입지사업이나 수도권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 ■ 평가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세세항 기준으로 단년도 사업비 10억 미만과 총사업비(국고지원 기준) 50억 미만의 사업 - 비목 : 인건비, 물건비 등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만으로 구성된 사업 - 사업성격 : ① 국제협약, 법령, 계약에 따라 국가가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 ② 청사건축, 복지시설지원, 실업자 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원칙과 기준 아래 추진되는 사업 및 환경보전사업, ③ 국방, 안보, 치안 등 국가안위와 주민안전 관련사업, ④ 기타 일상적인 행정기능 수행사업
	평가지표 및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수도권 인구분산(13) 1-2 수도권 경제력 분산(15) 1-3 수도권 사회적 비용 절감(14) ■ 지역균형발전 효과(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비수도권 인구증가 및 고용유발(15) 2-2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15) 2-3 비수도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12) 2-4 비수도권 지역혁신역량 강화(10) 2-5 시설 활용도, 기존시설 및 기관 등과의 시너지효과 창출(6)
운영체제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평가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 (가칭)균형발전영향평가센터 신설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체크리스트평가→사업결정→예산반영→재정사업 자율평가

- 지방분권 영향평가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특정의 정책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임
 - 동 연구는 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기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평가체제에서는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운영체제에서는 추진체제와 추진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표 2-7> 지방분권 영향평가제도 연구내용

구 분		내 용
평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의 국가정책이 집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목적성을 제고
평가체제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성격별 : 특정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책,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 - 소관부처별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의 관련정책 - 영향범위별 :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지방자치단체 사무 수 1-2 지방자치단체 인력 수 1-3 지방자치단체 기구 수 1-4 지방자치단체 재정 1-5 국가의 지도감독 회수 ■ 질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국가의 지도감독 강도 2-2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2-3 지역주민 삶의 질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평가절차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향 설정→평가문제 형성→평가설계→자료수집과 분석→결과보고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평가방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의 활용
운영체제	추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소속의 평가위원회 설치 ■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정부 또는 사업자)→영향평가(행정자치부 평가위원회)→영향평가결과 심의(행정자치부)→사업추진 여부결정(추진, 보완, 보류, 폐지 등 결정)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특별법 제21조 개정

-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령과 제도의 수립이 지방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임

<표 2-8>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 연구내용

구 분		내 용
평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상의 획일적 법률의 제·개정이나 제도적 설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평가체제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제도 - 중점 평가대상 : 도시계획, 산업입지, 토지이용(농지·산지·초지이용), 주택 및 건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 비중점 평가대상 : 중점 평가대상을 제외한 법률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여부 판단기준 - 법령내용 기준 - 법령성격 기준 ■ 지역별 차등영향평가여부 기준 - 도시계획 : 지역간 도시계획 적용의 영향 - 산업입지 : 지역간 산업입지 영향, 지역의 특수여건 감안 - 토지이용 : 일률적 토지이용규제 영향, 특정여건 감안 - 주택·건축 : 건축규제의 일률성으로 인한 타지역 영향 - 환경 : 환경규제의 일률성으로 인한 타지역 영향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분야 평가절차 - 평가착수→평가대상 여부판단(체크리스트, 해당부처)→평가(체크리스트, 지방영향평가위원회)→시정조치·권고·평가완료 ■ 비중점분야 평가절차 - 지자체 민원제기평가착수→평가대상 여부판단(체크리스트, 해당부처)→평가(체크리스트, 지방영향평가위원회)→시정조치·권고·평가완료
운영체제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원적 구조로 편성 - 해당 중앙부처, 지방영향평가위원회, 평가자문단 ■ 해당부처 - 법령 관할부처, 자체평가 ■ 지방영향평가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위원장), 관련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 구성, 해당법령 평가 ■ 지방영향평가자문단 - 해당분야 대학·연구소 등 전문가, 평가자문
	평가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법령 제안기관 대상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대안 - 기존법률에 관련조항 설치 - 별도의 근거법률 제정 - 「정부정책의 지역간 차등적용에 관한 법률」 제정

- 동 연구는 국내외의 유사제도의 사례분석과 법령에 대한 민원실태 분석을 통하여 평가체제에서는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운영체제에서는 평가주체와 평가활용 및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 전술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방영향평가”와 다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준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즉, 전술한 기존의 연구들도 원칙적으로 영향평가의 구조상 활용목적에서는 부정적 영향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의 마련으로 분야별 적정상태를 확보하는 것임
 - 그러나 영향평가의 대상이 각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지방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등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평가체제와 운영체제 모두에서 평가대상에 따른 구체적 모형이 설계되어 내용의 직접적 준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평가체제와 운영체제의 구조설계에서도 연구별 요소의 가감으로 직접적인 준용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표 2-9> 기존연구의 내용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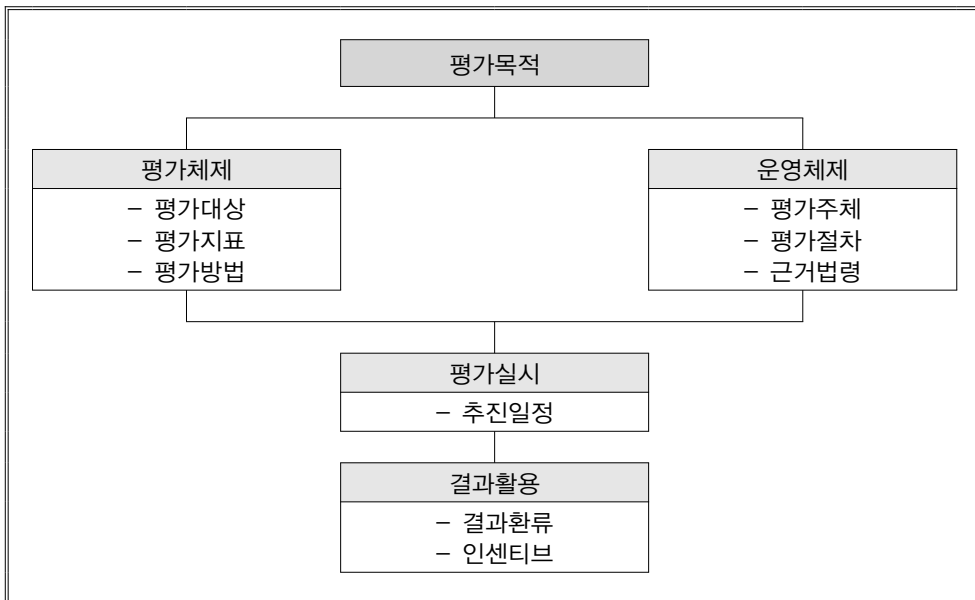
구분		균형발전 영향평가	지방분권 영향평가	법령·제도 지방영향평가
평가목적		○	○	○
평가체제	평가대상	○	○	○
	평가기준			○
	평가지표	○	○	
	평가방법		○	
운영체제	평가주체	○		○
	평가절차	○	○	○
	평가활용			○
	근거법령		○	○

- 우선, 평가체제에서는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서 그리고 운영체제에서는 평가주체와 평가절차, 평가활용 및 근거법령에서 연구별로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2. 도입의 검토요건

- 전술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지방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일반적 요건을 기준으로 필요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즉, 지방영향평가도 역시 정책평가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일반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한 것임
-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규정되면, 다음과 같은 기본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설계가 이루어짐

<그림 2-7> 정책평가의 기본체계



- 우선, 평가목적에 근거하여 평가체제로서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운영체제로서 평가주체와 평가절차 및 근거법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결과가 평가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것임
- 전술한 정책평가의 일반적 기본체계에 비추어 지방영향평가 역시 구성요소의 검토가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즉,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모형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목적과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의 제반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평가모형의 구성요소별 검토기준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 즉, 평가목적은 명확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평가체제에서 평가대상은 타당성을, 평가지표는 체계성을, 평가방법은 적정성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운영체제의 평가주체는 객관성을, 평가절차는 합리성을, 근거법령은 안정성을 기준으로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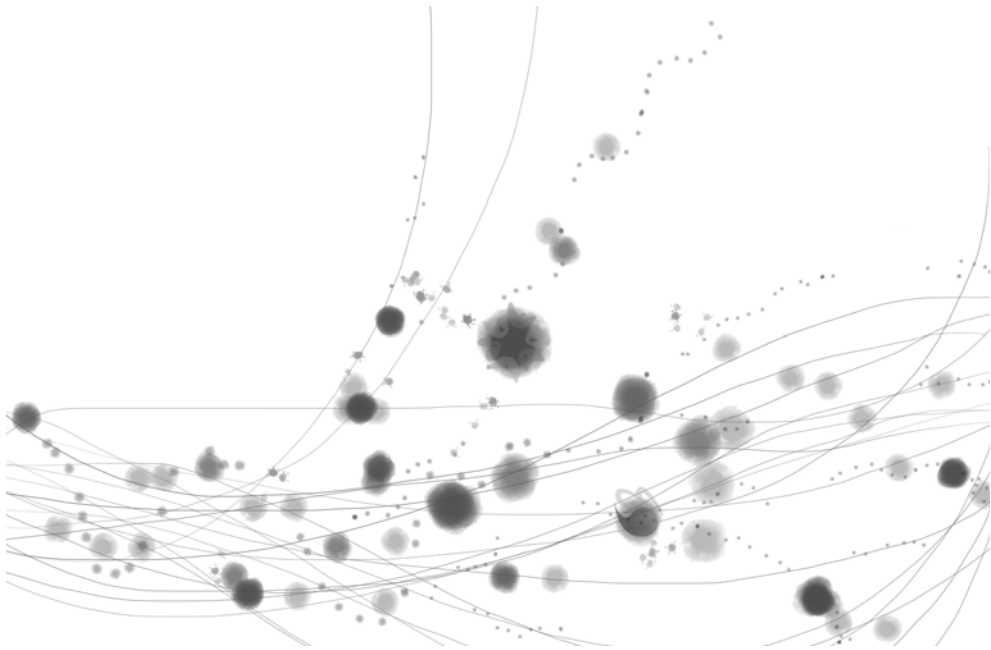
<표 2-10>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검토요소

구분		검토기준
평가목적		타당성
평가체제	평가대상	명확성
	평가지표	체계성
	평가방법	적정성
운영체제	평가주체	객관성
	평가절차	합리성
	근거법령	안정성

제 3 장

지방영향평가의 실태분석

- 제1절 실태분석 구조
- 제2절 관련제도의 실태분석
- 제3절 관련제도의 한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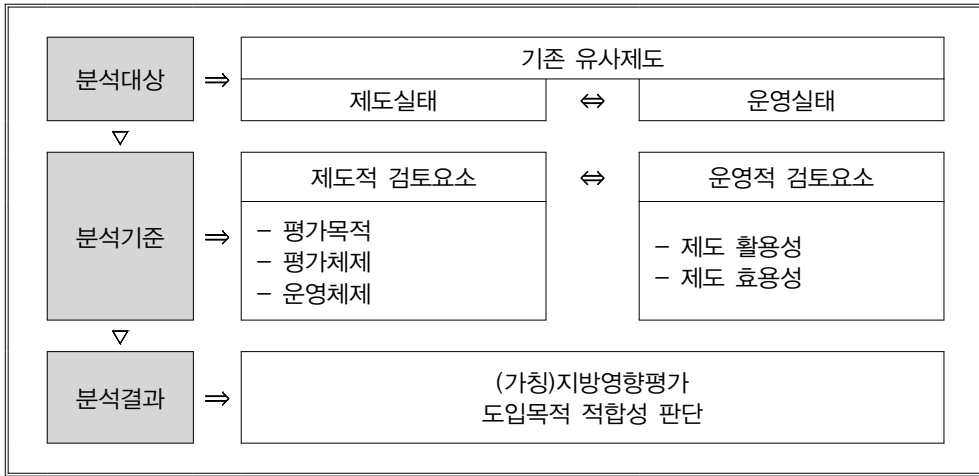
제 3 장

지방영향평가의 실태분석

제1절 실태분석의 구조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도입방안이긴 기존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유사한 제도들이 일부 운영되어 왔음
 - 따라서 여기에서의 실태분석은 유사한 관련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적 및 운영적 실태를 분석하고,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을 기준으로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제도의 실태는 다음과 같은 분석구조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함
 - 즉, 기존의 유사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적 검토요소와 운영적 검토요소를 적용하여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임
 - 우선, 기존의 유사제도는 법적 및 비법적 제도의 전체를 망라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 제도적 검토요소로는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검토요소로 제시한 평가목적과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를 적용하고, 운영적 검토요소로는 관련제도의 활용성과 효용성을 적용하고자 함

<그림 3-1> 유사제도 실태분석의 구조



제2절 관련제도의 실태분석

1. 지방4대 협의체

1) 제도실태

-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도회의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의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음
- 지방4대 협의체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및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법정단체이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정부에 대한 의견제출권임

- 즉,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없이 해당 협의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표 3-1>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구 분	내 용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회의회의 의장 <p>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p>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운영실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 제시한 의견제출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8건의 법령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회신결과는 수용(일부수용 포함)이 150건으로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곤란은 97건(32.5%), 장기검토는 50건(16.7%)으로 나타나고 있어 약 절반에 가까운 수용도를 보이고 있음

<표 3-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제출 현황

구분		계	정부회신			
			수용(일부수용포함)	수용곤란	장기검토	미회신
2005년	13차	19	8	8	3	0
2005년	14차	27	13	7	7	0
2006년	15차	34	24	8	2	0
2007년	16차	34	18	11	5	0
2007년	17차	29	15	11	2	1
2008년	20차	27	16	7	4	0
2009년	21차	22	11	9	2	0
2009년	22차	27	17	4	6	0
2010년	23차	30	11	14	5	0
2011년	24차	2	14	17	11	0
2012년	25차	7	3	1	3	0
계		298(100.0)	150(50.3)	97(32.5)	50(16.7)	1(0.5)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2). 내부자료.

- 전술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견제출 실적에 비추어 보면, 운영의 활용성과 효용성은 다음과 같음
 - － 우선, 활용성 측면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총 298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연 평균 37.3건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은 없지만, 비교적 높은 활용성을 보인 것으로 간주됨
 - － 다음, 효용성 측면에서는 298건 가운데 50.3%인 150건이 수용되어

매우 높은 실적은 아니지만, 이 역시 비교적 효용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 목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에서 지방의 부정적 영향요소를 사전에 분석하는 기능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2.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1) 제도실태

-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이전에는 현안과제가 있을 때마다 시·도지사회의를 소집하여 국가의 정책과 현안과제를 시달하였으나,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회의의 운영은 과거와 같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과 현안을 시달하는 형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현안정책 및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과 협의, 평가, 수범사례의 소개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부처도 정책이나 입법안에 관하여 회의자료를 배부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현행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 대한 입법이나 정책건의는 행정안전부가 취합하여 통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특별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정책 입안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례회의로 운영되고 있음

2) 운영실태

-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나, 회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 따라서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의 활용성과 효용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특히,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기초로 국가적 현안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장정책의 지방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음

3.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

1) 제도실태

-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와 다른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관련 법령의 제정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3-3> 행정안전부 법령안심사 규정

구 분	내 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 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 3. 행정안전부 훈령·예규의 운용
제2조 (법령안에 대한 부내심사)	①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 관련법령 및 경찰청 또는 소방방재청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 ②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심사요청서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법령안 2부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	법령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안 심사결과에의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법제처 심사에 대한 협조)	①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부서(과)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부서를 지정하여 법령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7조 (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제출)	① 법령안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구 분	내 용
제8조 (검토의견의 조정)	<p>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동일한 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담당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중요정책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p>
제9조 (훈령·예규안의 심사)	<p>① 훈령·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규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예규 전문 4. 관계법령 5. 홈페이지 게시 여부(게시 불가시 그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p>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예규안의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에 수정·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훈령·예규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p>
제10조 (훈령·예규의 폐지권고)	<p>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예규가 [별표3]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제11조 (훈령·예규의 공포)	<p>① 훈령·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여야 한다.</p> <p>② 훈령·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예규안의 결재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p> <p>③ 훈령·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12조 (훈령·예규집 발간 등)	<p>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p> <p>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예규의 입안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훈령·예규의 입안부서는 훈령·예규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행정안전부의 자체적인 법령안의 입안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음
 - 법령내용의 적절성에 관해 심사를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내용의 포함여부임

<표 3-4> 행정안전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기준

심사기준	세부사항
입법의 필요성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 불필요한 중복 입법은 아닌지 여부
법체계상의 정당성	•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유무
법령 내용의 적절성	• 기업·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유무
	• 국민에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규정의 유무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법령안에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령의 현실성·실효성	• 법령안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 형식의 정확성	• 법률용어의 정확성, 전체적인 통일성 등

- 다른 부처소관의 법령안 입안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음
 - 다른 부처소관의 법령안에 대한 입법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동시에 심사하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즉, ①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② 국가의 자의적인 통제를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을 최소화하였는지 여부, ③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신설할 경우에 별도의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표 3-5> 타부처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기준

검 토 기 준	세 부 사 항
입법의 필요성	• 입법 또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익향상에 필요한지 검토)
법령체계의 정당성	• 입법 형식은 적정한지 여부 •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예의 영향	•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의 소관 법령과 모순·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여부 • 불필요한 각종 자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없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예의 영향	•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 국가의 자의적인 통제를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을 최소화하였는지 여부 •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신설 할 경우에 별도의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

- 행정안전부 자체적인 훈령 및 예규의 입안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음
 - 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규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표 3-6> 훈령·예규안의 입안 및 심사기준

심 사 기 준	세 부 사 항
입안의 필요성	• 반드시 훈령·예규를 입안하여야만 하는 사항인지 여부 (사안별로 공문조치 가능한 경우 공문으로 대응하고 훈령·예규의 신설을 자제) •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아닌지 여부 ※ 상위법령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유사한 훈령·예규로 규율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훈령·예규 입안 금지
법체계상의 정당성	•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유무
내용의 적절성	• 훈령·예규 입안·심사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기업·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②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인 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규정 ④ 과도한 재량 인정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규정 ⑤ 법률에 정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을 불필요하게 남설하는 규정
실행가능성	• 훈령·예규안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여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
형식의 정확성	• 용어의 정확성, 전체적인 통일성 등

2) 운영실태

- 전술한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규정”은 행정안전부와 여타 중앙부처의 법령안 입안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2008년에 제정된 것임
 - 그러나 규정의 제정 이후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어서 제도운영의 활용성과 효용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음
 - 제도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보면, 운영 효용성의 결과가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지방영향평가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사시분석을 위한 운영실적이 부재함

4. 지방재정부담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과 경비 및 국고보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재정부담을 주는 법령안의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경비 및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소속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 ①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경비에 관한 사항, ②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

<표 3-7>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구분	내용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 3-8> 재정부담심의회위원회 관련규정

구분	내용
지방재정법 (제27조의 2)	<p>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구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무총리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p>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p>	<p>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p> <p>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p>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규정</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규정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및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p>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p> <p>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p> <p>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장은 안전에 따라 부의 안전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안전제출 및 배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때에는 해당 사업·법령 또는 정책입안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 결과, 지방재정 증감 추계 및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전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자는 위원으로부터 법 제27조의2제1항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p> <p>제6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전에 대한 사전심사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가 된다.</p> <p>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으로 한다.</p> <p>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2) 운영실태

- 지방재정심의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법률안 제·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도입한 것임
 - 이처럼 제도도입의 시기가 일천한 까닭에 실제 제도운영의 실적은 많지 않은 실정임
- 지방재정심의회 운영은 2011년 제도도입 이후 2012년에 2회 개최된 것이 실적의 전부임
 - 1차 심의는 2012년 6월 11일에 “지방재정부담심의회위원회 운영계획”과 “지방재정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개최되었고, 2차 회의는 2012년 7월 17일에 “201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한 지방비 부담수준의 적정성 등”을 안건으로 개최되었음

<표 3-9> 제2차 재정부담심의회 심의대상

연번	사업명	부처
1	지역투자촉진사업	지식경제부
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4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5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6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석면관리종합대책의 세부사업)	환경부
7	영유아 보육사업(보육료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8	모성아동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보건복지부
9	소하천정비	소방방재청
10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청
11	산불방지대책	산림청
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	여성가족부
14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의 세부사업)	지식경제부
15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교육과학기술부
16	뇌연구원 설립·운영(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교육과학기술부

- 전술한 재정부담심의의 운영실적에 비추어 보면, 제도운영의 활용성과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우선, 활용성은 2회에 걸쳐 심의회가 개최되어 절대적 규모측면에서는 매우 적으나 이는 제도도입의 기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되, 빈도측면에서는 2012년 6월과 7월에 각각 개최되어 비교적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음, 효용성은 제2차 회의결과의 반영률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그 결과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예단하기는 다소 곤란함
 - 다만, 제도도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제2차 회의에 비추어 보면, 제도운영의 성과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에도 상당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절 관련제도의 한계분석

1. 제도적 검토요소 분석

- 제도적 검토요소에 기초한 관련제도의 한계분석은 관련제도의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요소들이 충분히 구비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적합성을 분석하는 것임
 - 즉, 전술한 관련제도의 내용이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필요한 평가목적과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의 구비요소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임
- 지방4단체 협의회와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 및

재정부담심의 등이 제도적으로 구비한 검토요소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4단체 협의회는 설치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증진과 공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상응하는 제도적 검토기준을 구비하고 있지 못함
-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채널로 활용되고 있어서 전술한 지방4단체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적 검토기준은 불비한 상황임
-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는 비교적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의 법령안이 자치권의 제약과 사무배분 적정성, 중앙감독 최소화 및 지방의 재정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3-10> 관련제도별 제도적 검토기준 비교

구분		지방4단체협의회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행정안전부 법령안심사	재정부담심의
평가목적		-	-	지방자치단체 부정적 영향검토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 검토
평가체제	평가대상	-	-	자치권 제약 사무배분 적정성 중앙감독 최소화 지방 재정부담	지방재정부담
	평가지표	-	-	-	-
	평가방법	-	-	서류심사	서류심사
운영체제	평가주체	-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담당관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
	평가절차	-	-	-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	행정안전부 법령안심사규정	재정법

- 재정부담심의도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일정수준 충족하고 있는 제도로 전술한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와 달리 재정에 국한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초래될 재정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술한 지방4단체 협의회,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 및 재정부담심의 등의 제도적 내용에 따르면,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방4단체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설치목적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대처에 있어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필요한 제반 구비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역시 전술한 지방4단체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채널의 확보 필요성에서 설치된 것으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에 필요한 구비요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 행정안전부의 법령안 심사는 “(가칭)지방영향평가”와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상당수준의 구비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평가지표와 평가절차의 부재, 평가방법과 평가주체 및 근거법령 등에서 요소별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재정부담심의 역시 전술한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목적에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와 평가절차의 불비와 평가목적 및 평가대상의 제한 그리고 평가방법의 적절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대안의 설계에서 일부 관련제도의 요소별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는 있음
 - 즉,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와 재정부담심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목적과 평가대상 등은 대안설계의 관련부문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표 3-11> 관련제도의 제도적 한계

구분	내용
지방4단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목적의 상이 - 구비요소의 불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목적의 상이 - 구비요소의 불비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요소의 불비 -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의 불비 ■ 일부요소의 타당성 미흡 - 평가방법의 적정성 미흡 - 평가주체의 객관성 미흡 - 근거법령의 안정성 취약
재정부담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요소의 불비 -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의 불비 ■ 일부요소의 타당성 미흡 - 평가목적 및 평가대상의 제한 - 평가방법의 적정성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도의 개선대안 반영 -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 및 재정부담심의의 일부요소 반영 필요 - 평가목적 및 평가대상의 반영 검토 	

2. 운영적 검토요소 분석

- 운영적 검토요소에 기초한 관련제도의 한계분석은 제도별 활용도와 효용도를 적용하여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임
 - 즉, 관련제도의 운영실태가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임
- 지방4단체 협의회와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 및 재정부담심의 등의 운영실태를 활용도와 효용도를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4단체 협의회의 운영실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연 평균 37.3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50.3%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음
 -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월1회 개최하여 회의결과를 지방시책에 반영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는 제도도입 이후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심사결과의 반영실적이 부재함
 - 행정안전부의 재정부담심의는 2012년 2회 개최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반영시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음
- 전술한 관련제도의 운영실적결과에 근거하면,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대안개발에 반영할 시사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4단체협의회와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제도 자체의 관련성이 낮고, 행정안전부 법령안심사와 재정부담심의는 운영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대안개발의 반영요소를 도출하기는 곤란함

<표 3-12> 관련제도별 운영적 검토기준 비교

구분	지방4단체협의회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행정안전부 법령안심사	재정부담심의
활용성	- 연 평균 37.3건	- 월 1회	- 미심사	- 2회 심의
효용성	- 반영률 50.3%	- 지방시책 반영	- 미반영	- 시기 미도래
▽				
■ 관련제도 개선대안 반영 - 운영실적 측면의 반영요소 부재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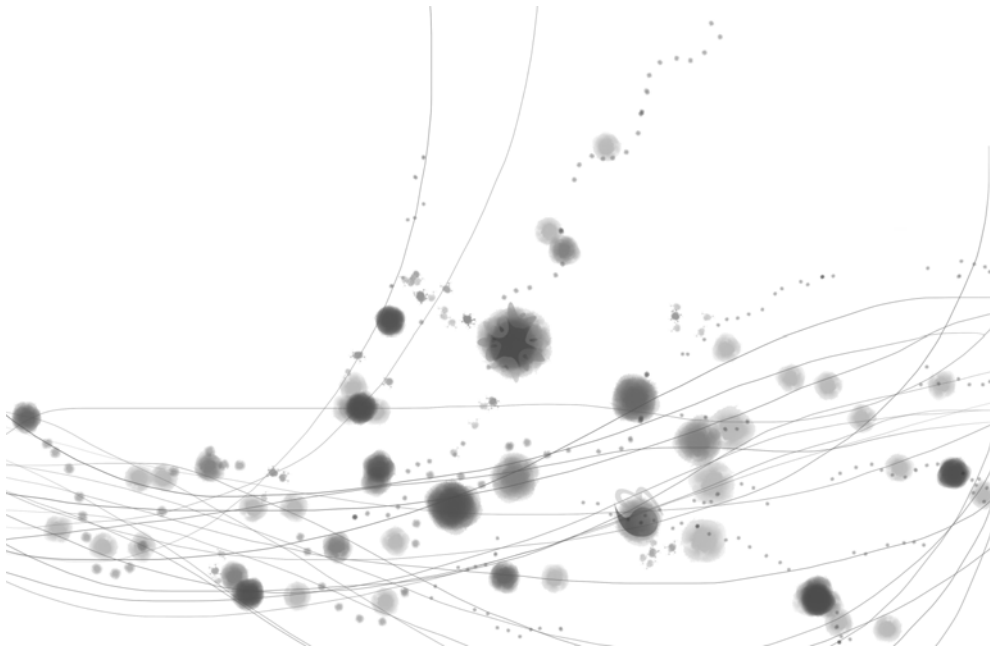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제1절 분석설계

제2절 국내 유사제도의 사례

제3절 외국 유사제도의 사례

제4절 유사제도의 분석결과



제 4 장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제1절 분석설계

1. 분석목적

- 국내외 유사제도의 분석은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도입방안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 “(가칭)지방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로 대안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대안설계는 정책평가의 일반적 구조인 평가목적과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를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함
 - － 이러한 내용들은 “(가칭)지방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직접적인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국내외 유사제도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임

2. 분석대상

- 국내외 유사제도의 분석대상은 “(가칭)지방영향평가”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되는 제도들을 대상으로 함
 - － 즉, 특정정책의 수립에 따라 특정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특정분야의 건전한 상태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를 말함
- 국내외 분석대상 유사제도로는 전술한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되는 전체

제도를 포함함

- 즉,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해당됨

- 외국의 분석대상 유사제도 역시 전술한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되는 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편의상 자료구득 여부를 반영하여 대상을 선정함
 -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및 캐나다를 사례대상의 국가로 선정함

3. 분석방법

- 국내외 유사제도의 분석은 분석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책평가의 일반 구조인 평가목적과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의 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 우선 1단계로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개별제도를 중심으로 해당제도별 전술한 분석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2단계로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제도를 중심으로 전술한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함
 - 이와 같은 2단계의 분석을 통해서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대안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확보하고자 함

<그림 4-1> 대상제도의 분석방법



제2절 국내 유사제도의 사례

1. 교통영향평가

1) 평가목적

-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 및 분석하여 사전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이를 통해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사업지 내외부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임
 - － 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요소를 개선하여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업시행자가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교통개선사업을 지정하고, 관할 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함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시설물의 입지특성 및 용도유형을 세분화하여 발생교통량이 100대/시간당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 도시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동일하고 대상면적만 상이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의 민간투자사업과 각종 용도의 시설건립으로 주거·종교·의료·업무·관람집회·판매·숙박·위락·자동차관련·방송통신·공장·교육연구·저장·관광휴게·체육·사회복지·위험물판매·근린생활·장례묘지관련·청소년수련·동물관련·공공용 등이 포함됨

(2) 평가지표

- 교통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평가내용에 따라서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통행발생율, 통행수단 분담율,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원단위, 평균재차인원 등 교통환경
 -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과 교통시설설치계획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평가방법

-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통합평가법」에 따라 인구·재해·환경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사업자가 작성 및 제출한 평가서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평가함

3)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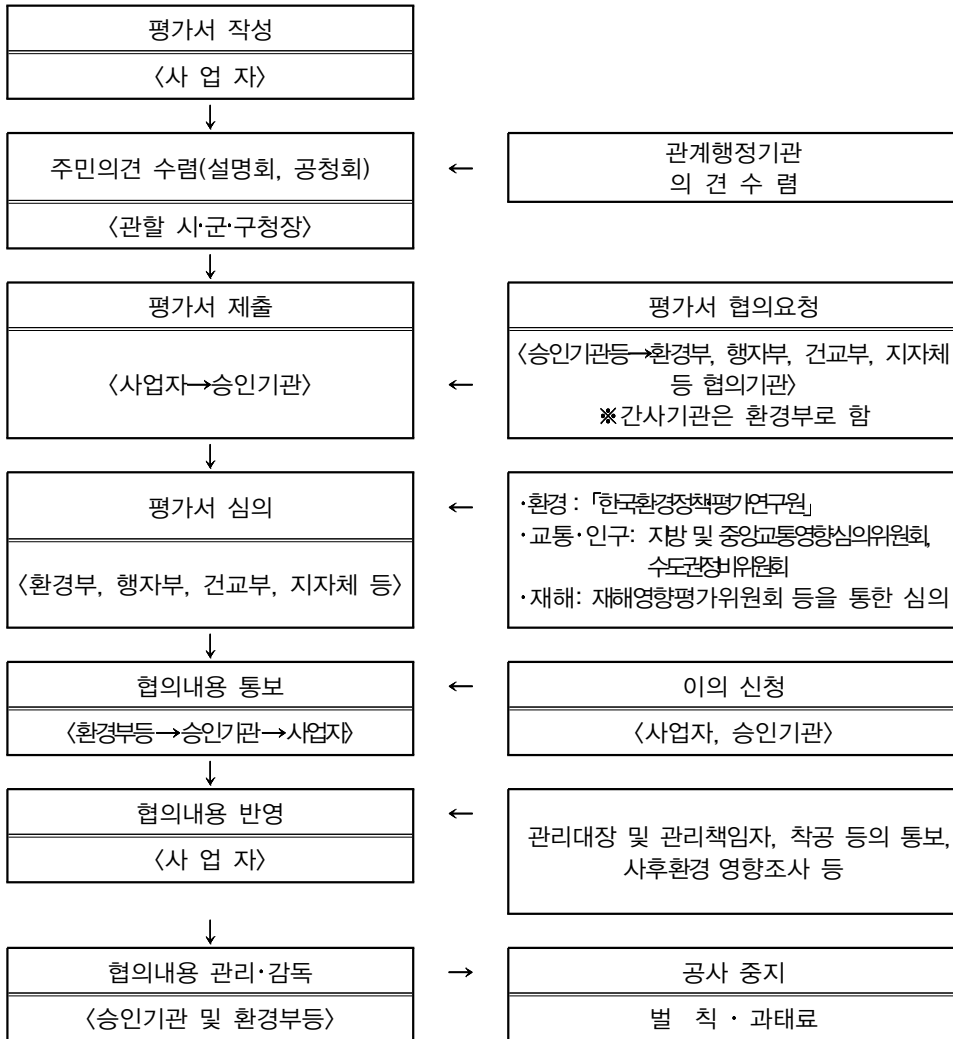
(1) 평가주체

- 교통영향평가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이나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즉, 교통영향평가는 인구영향평가와 함께 지방 및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2) 평가절차

- 교통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통합평가법」에 따라서 인구·재해·환경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평가서 작성→주민의견수렴→평가서 제출→평가서 심의→협의내용 통보→협의내용 반영→협의내용 관리·감독 등의 절차를 거침

<그림 4-2> 교통영향평가의 절차



(3)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 1. 1)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업무지침)

2. 규제영향평가

1) 평가목적

- 규제영향평가는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 즉,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신설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을 개발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임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규제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규제임
 - － 여기서의 행정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고, 또한 법령 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고시 등을 의미함

(2) 평가지표

- 규제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8개 요소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 8개 요소로는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②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③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④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⑤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⑥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⑦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⑧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등임

<표 4-1> 규제영향평가지표

요 소	항 목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규제의 목표 설정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 요소 -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3) 평가방법

- 규제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추진하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자료심사를 실시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로 결정이 되면, 본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신설이 가능함

<표 4-2>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④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

3) 운영체제

(1) 평가주체

- 규제영향평가의 주체는 평가단계에 따라 평가주체를 달리하는 이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 즉, 1차적으로 규제생산 부처가 자체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 규제개혁 위원회가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함

(2) 평가절차

- 규제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자체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평가를 합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됨
 - 즉, 자체심사→규제심사 청구→예비심사→심사완료→해당기관 통보→재심사요청→재심사완료→권고→처리결과 제출→법제처심사→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침

(3) 근거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지침(규제개혁위 지침)

<그림 4-3> 규제영향평가 절차



3. 균형발전영향평가

1) 평가목적

- 균형발전영향평가는 국가재정사업이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지원 및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의 적정성을 국가균형발전의 기여측면에서 검토함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일반 재정사업과 균특사업의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즉, 계속사업(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평가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과 신규사업(전 사업)을 모두 포함하며, 평가제외 사업의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3> 균형발전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예시)

기 준	평가 제외 대상사업
사업규모 기준	○ 평가단위 기준으로 단년도 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사업 또는 총사업비(국고 지원 기준) 200억원 미만의 사업
비 목 기준	○ 인건비(100), 물건비(210-01~11·12·14·16, 220, 230, 240, 250), 경상이전(310-02, 330-02, 340-01~02, 510-03), 해외자본이전(340-03), 용자금(450), 보전지출(510), 정부내부거래(600), 예비비 및 기타(700)
사업성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법령·계약에 따라 국가에게 지출의무가 부여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외국과의 협약 등에 따른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사업, 국제기구 분담금, EDCF 사업 등 ▪ 법정절차에 따라 민간 또는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추진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사업, SOC 민간투자사업, 광역시 지하철건설지원 등 ○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원칙·기준아래 추진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이 정해진 기관·시설물의 건설이나 법령 등에 따라 입지가 사전에 정해진 사업. 단,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하는 기관·시설물설치 사업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세무서 등 일선행정관청, 초·중등학교 ▪ 전국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또는 환경보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기초생보자·실업자 지원, 보호보상금, 노인연금 등 * 댐건설, 환경오염개선·오염물질처리사업 등 ○ 국방·안보·치안 등 국가안위와 주민안전 관련사업. 단, 훈련시설을 제외한 교육연수·홍보·후생복지시설은 평가 ○ 일상적인 행정기능 수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능 수행을 위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유지, 방조제·항만·공항 등 유지관리, 해외공관구입 등 ▪ 기관 고유의 통계조사·홍보·교육사업 등 일상적 행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관측, 선거관리, 인구통계센서스, 농산물 작황조사 등 ▪ 표준화(인증, 특허 등)·D/B구축·연구용역 및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사업

(2) 평가지표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목표의 실행계획 및 달성도, 균형발전 기여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대상 여부의 판단기준과 신규 수도권입지사업의 판단기준 등을 포괄한 평가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4> 3가지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

평가측면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대상 여부	- 사업비 기준	- 사업성격에 대해서는 상기 평가제외사업 참조
	- 비목 기준	
	- 사업성격 기준	
균형발전영향	-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	- 지표 및 목표 확인
	- 균형지표의 목표달성 실행계획 및 달성여부	- 연차별 목표달성계획 수립여부 - 균형발전측면의 적정투자계획 수반여부
	- 당해사업의 균형발전 기여도	- 삶의 질 향상 : 소득증대, 생활안정, 인프라 및 서비스 향상, 재해위험 감소 - 지방의 경제, 사회활성화 기여 : 산업체 증가, 생산량 증가, 인구 및 취업률 증가, 정보격차 완화
신규수도권 입지사업의 경우	- 수도권 입지사유	- 수도권 도시기본기능 개선을 위한 불가피성 여부 -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수도권입지의 유리성 - 재정부담측면에서 비수도권 입지의 불합리성 - 절차적 측면에서 수도권입지의 적절성
	- 수도권 집중영향	- 수도권 인구집중의 영향정도 -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영향정도 -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발생 정도

(3) 평가방법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전술한 3개의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료심사를 실시함
 - 특히, 2006년부터는 각 부처가 설정한 사업별 균형지표·연차별 목표를 점검·관리하는 평가체제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4-5> 사업별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예시)

부처명	사업명	균형지표	목 표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조성	(8도 사업지원규모/전체사업규모) ×100	76%('06)→80%('1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자체에 대한 지원비중	'10년까지 50%로 확대
과학기술부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지방과학관 면적비중	'10년까지 50%로 확대
	특정기초연구지원	지방대학지원과제 선정비율	'10년까지 60%로 확대
문화관광부	공립미술관 건립	수도권 대비 지방공립미술관 건립비중	'10년까지 80% 이상 수준 유지
	관광안내체계개선	비수도권 지원비율	'10년까지 60%로 확대
	예술창작활성화 프로그램	비수도권 지원비율	'10년까지 80%로 확대

3) 운영체제

(1) 평가주체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주체는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균형발전평가단」이 담당하고 있음
 - 평가단의 구성은 분야별 및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각 최소인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4-6> 균형영향발전평가단 구성방향

① 교통 및 지역개발, 보건복지 및 환경, 통신·과학기술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선정 ②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 지방(비수도권) 거주자 60% 이상 구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천 인사도 포함)

(2) 평가절차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즉, 평가지침서 제시→균형지표 설정→지표확정→체크리스트평가서 작성→평가서 송부→균형발전영향평가→평가서 송부→평가결과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침

<그림 4-4> 균형발전영향평가 절차



(3)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조

4. 기술영향평가

1) 평가목적

-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함
 -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사회의 제반영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기술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음
 - 기술영향평가의 최종적인 대상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후보기술로는 NBIT 융합기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미래에너지 기술(연료전지, 핵융합 기술),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 인공장기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평가지표

- 기술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평가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측면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①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임
- 또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심사자료로서의 기술영향평가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시되어 있음

- 즉, ① 평가주제 선정과 평가의 폭 및 시간범위 설정, ② 해당기술 또는 문제해결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된 기술을 면밀하게 기술, ③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영향분석, ④ 정책분석의 4단계 구조로 되어 있음

<표 4-7> 기술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구 분	내 용
1단계 : 평가주제 선정과 평가의 폭, 시간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는 기술자체 또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임 - 평가의 폭을 설정할 때는 좁게 정의된 기술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함께 볼 것인가를 결정하며, 시간범위까지 결정
2단계 : 해당기술 또는 문제해결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된 기술을 면밀하게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기술뿐 아니라 보완기술과 대안기술, 또는 경쟁기술 까지 포함하며, 기술의 진화경로에 대해서도 주의
3단계 :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효과는 해당 기술로부터 발생할 이익, 현재의 기술 또는 경쟁하는 기술과 비교했을 때의 우월성을 분석 - 부정적 효과는 해당기술에 잠복한 위험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분석
4단계 : 정책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분석 - 의도되지 않은 효과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와 이런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

(3) 평가방법

- 기술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새로운 기술의 내역서를 근거로 자료심사를 실시함
 - 다만, 여타의 영향평가와 달리 평가결과에 대한 이차적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확정하는 메타평가의 기능이 적용됨

3) 운영체제

(1) 평가주체

- 기술영향평가는 전술한 평가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메타평가 기능이 적용됨으로써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기본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메타평가는 “기술영향평가위원회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음
 - 이처럼 기술영향평가에서 메타평가의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나 전망이 쉽지 않은 것에 근거하고 있음

(2) 평가절차

- 기술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즉, 대상기술 추천→대상기술선정위원회 검토→관계부처 협의→대상기술 선정→기술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평가결과 검토→기술영향평가결과 심의→평가결과 반영 등의 절차임

<그림 4-5> 기술영향평가 절차



(3)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2001.1.16)

5. 부패영향평가

1) 평가목적

-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즉, ①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② 법·제도상 부패취약 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며, ③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임

<표 4-8> 중점평가법령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국민적 효과가 있는 업무: 신청, 인허가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 결정·추진(국토개발, 도로·항만 등 건설) 등 ②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점 평가할 계획 (헌법기관, 국가보안, 조직·운영 등에 관한 일부 법령 제외) |
|--|

- 다만 법령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중점평가법령과 비중점평가법령으로 이원화하고 있음

(2) 평가지표

-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개 항목 9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① 위임·위탁, ② 단속·점검, ③ 인·허가 등, ④ 보조·지원, ⑤ 조사, ⑥ 부과·징수, ⑦ 인사, ⑧ 위원회 등이 적용되고 있음

<표 4-9>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지표

구 분	내 용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 적정성 - 제재규정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범위의 적정성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장치

(3) 평가방법

-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각 부처가 작성하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근거로 자료심사를 실시함
 - 다만,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청렴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함

3) 운영체제

(1) 평가주체

-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이나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두고 있음
 - 지원시스템으로는 분야별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기구로부터 자료 등을 지원받고 있음

<표 4-10>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기구와 기능

구 분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법령 등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 - 공공기관 협조 및 권고이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총괄 및 보완·발전
자문기구	-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의 작성·제출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2) 평가절차

-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청렴평가위원회의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를 포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즉,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의견수렴→부처별 자체심사→평가요청→청렴위원회 심사→부처별 통보→재심사 요청→재심사 완료→통보→처리결과 제출→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침

<그림 4-6> 부패영향평가 절차



(3) 근거법령

- 부패방지법 제20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13조의 3(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 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 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자문기구 등)

6. 성별영향평가

1) 평가목적

-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및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및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초한 정책실행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함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법령, 정책 및 사업 등으로 유형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해당됨
 - 즉,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별에 따라 수혜도 편차가 큰 정책, GEM, GDI 등 양성평등 관련 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타 기관장이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책 등임

<표 4-11> 성별영향평가 대상(예시)

분 야	평가 대상 정책 영역
행정 및 정책결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관계 법령 제·개정 · 공무원 국내외 훈련, 공무원 시험 관리, 사무환경 개선 · 공무원 인사 교류, 파견 및 결원 보충제도 등 · 개방형 직위 운영, 국가 인재 관리 등
경제활동 및 고용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각종 조세 관련 제도 · 물가 안정 대책, 소비자 보호 정책, 시장경제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직업적응훈련 사업, 자활직업훈련 사업 등

분 야	평가 대상 정책 영역
교육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인성 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 등 · 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교육 복지 정책 · 교원 양성·연수 등 교원 정책 등
복지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노인·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보육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최저생계비 지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공동체 육성 사업 등
가족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가족(모·부자가정, 미혼모 등) 지원 · 저출산 대비 정책, 모자보건 정책 · 부부 단위, 가족단위 상담·교육사업 실시 등
문화·사회·환경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 육성 사업 · 수도 및 생활하수, 오염 물질의 위해 방지,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정책, 지방의제21 조례 · 자원봉사자 육성·관리정책 등
기타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산불 피해 등에 대한 구호 업무 · 탈북자 지원 정책 ·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정책, 농촌 정보화 사업 등

(2) 평가지표

-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3개 항목 9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양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평가항목은 성별 구분과 성별 고정관념 및 성별 특성반영 등임

<표 4-12>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

구 분	내 용
성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구분조항 유무 -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성별 구분 개선계획
성별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정관념 관련조항 유무 -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성별 고정관념 개선계획
성별 특성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조항 유무 -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반영 필요성 -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반영 개선계획

(3) 평가방법

-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각 부처가 작성하는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료심사를 실시함
 - 자료심사는 평가항목과 요소별 여성가족부의 심의결과로 최종결과를 확정함

3)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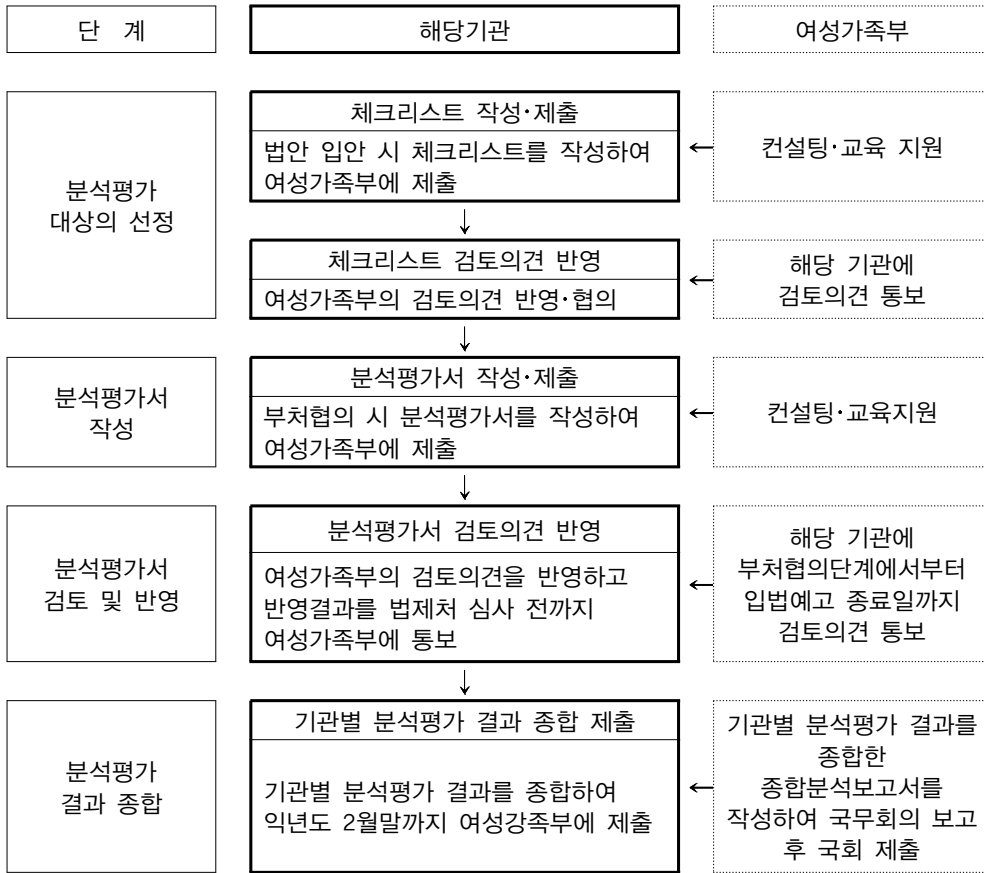
(1) 평가주체

-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주체는 전술한 여타 평가와 달리 여성가족부가 직접 관장함
 - 즉,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직접 평가를 시행함

(2) 평가절차

-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즉, 분석평가대상의 선정→분석평가서 작성→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분석평가 결과종합 등의 절차를 거침

<그림 4-7> 성별영향평가 절차



(3) 근거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7. 인구영향평가

1) 평가목적

- 인구영향평가의 평가목적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 및 대응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인구영향 사업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시에 당해 사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함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인구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수도권개발촉진법」에 의거 수도권만 해당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즉,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의 개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 30만㎡ 이상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10만㎡ 이상 관광단지의 개발 등이며, 단,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30만㎡ 이상이 해당됨

<표 4-13>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도시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다만, 토지이용 계획 상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가)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및 동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 전 및 동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나)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 및 동법 제39조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 입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및 산업 단지 조성	(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동법 제39조에 의한 특수지역개발 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 39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자유무역 지역 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전
관광 단지 개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 이상인 것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전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관광시설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전
	(나)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중 유원시설사업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다)온천법 제2조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온천법 제7조에 의한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 전

(2) 평가지표

- 인구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수도권의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인구집중의 수준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사업지역내 또는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한 인구인자의 변화, 인구증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및 장단기적 영향과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영향, 사업의 인구영향요소가 인구인자에 끼치는 영향의 지역적 범위·크기·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평가방법

- 인구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통합평가법」에 따라 교통·재해·환경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사업자가 작성 및 제출한 평가서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평가함

3)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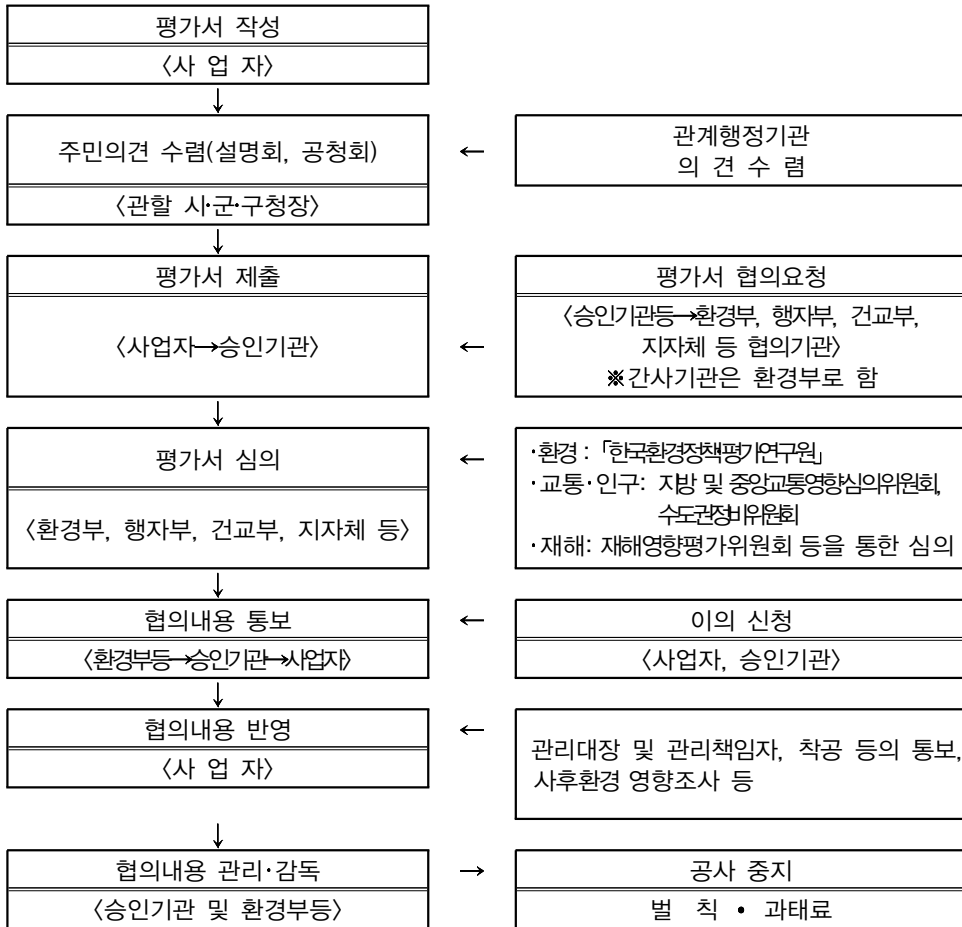
(1) 평가주체

- 인구영향평가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이나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즉, 인구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지방 및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2) 평가절차

- 인구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통합평가법」에 따라서 교통·재해·환경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평가서 작성→주민의견수렴→평가서 제출→평가서 심의→협의내용 통보→협의내용 반영→협의내용 관리·감독 등의 절차를 거침

<그림 4-8> 인구영향평가의 절차



(3)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인구영향평가서 작성요령(건설교통부 지침)

8. 재해영향평가

1) 평가목적

- 재해영향평가의 평가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의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허가·인가·면허 또는 결정을 할 경우 당해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기 위한 것임

2) 운영체제

(1) 평가대상

- 재해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선정기준이 비교적 간략하게 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 즉, 대상 항목의 도시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등 사업과 동일하고 면적은 대부분 30만㎡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함

<표 4-14>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3.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5.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범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80만㎡ 이상인 것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2.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18홀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산지의 개발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항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형질변경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유수지 매립 등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만㎡ 이상의 유수지 시설의 변경사업

(2) 평가지표

- 재해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각종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설정되고 있음
 - 즉, ① 유역의 강우-유출관계, 유출 특성의 추정과 관련된 기하학적 특성, 토지의 이용 상황, ② 대상 유역내 하천현황 및 합류상황 등 유역 내 배수체계, ③ 홍수유출·토사유출·사면안정 해석 및 재해발생 현황, ④ 재해영향 저감대책의 실효성, ⑤ 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의 합리성 등임

(3) 평가방법

- 재해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통합평가법」에 따라 교통·인구·환경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사업자가 작성 및 제출한 평가서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평가함

3)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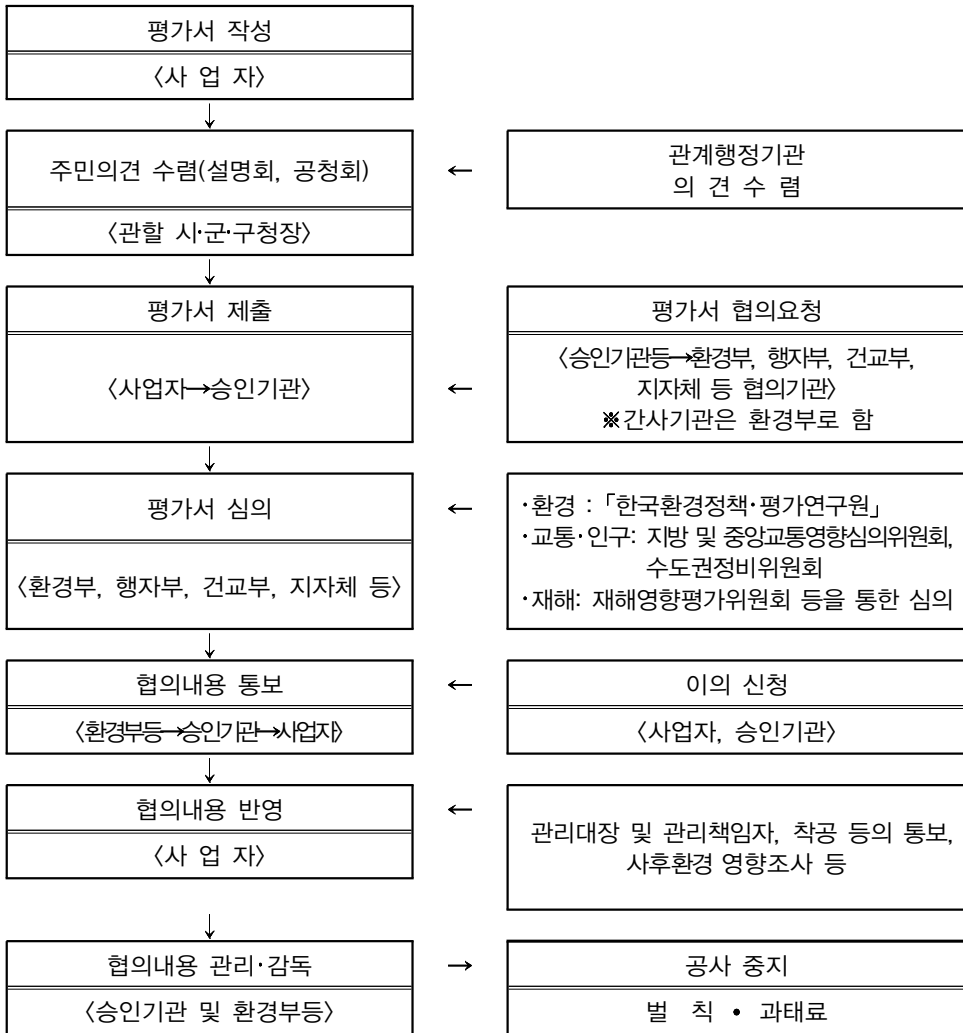
(1) 평가주체

- 재해영향평가의 주체는 소방방재청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즉, 독립기구로 설치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재해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평가절차

- 재해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통합평가법」에 따라서 교통·인구·환경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평가서 작성→주민의견수렴→평가서 제출→평가서 심의→협의내용 통보→협의내용 반영→협의내용 관리·감독 등의 절차를 거침

<그림 4-9> 재해영향평가의 절차



(3)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9. 환경영향평가

1) 평가목적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평가체제

(1) 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음
 - 도시의 개발 : ① 주택지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 도시재개발사업(25만 m^2 이상), 도시계획사업중 운하·유통업무설비·주차장시설(25만 m^2 이상)·시장(15만 m^2 이상), ②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30만 m^2 이상), 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20만 m^2 이상), 학교(30만 m^2 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10만 m^2 이상), 기업도시개발(25만 m^2 이상)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중소기업단지·자유무역지역·공장·공업용지·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면적이 15만 m^2 이상
 - 에너지개발 : 에너지개발목적의 해저광업, 에너지개발목적의 광업(30만 m^2 이상), 전원·전기설비개발사업(1만kw 이상 발전소, 10km 이상 지상송전선로, 765kv 이상 옥외변전소, 30만 m^2 이상 회처리장, 5만 m^2 이상 저탄장, 10만 kl 이상 송유관 시설 중 저유시설, 10만 kl 이상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석유비축시설

- 항만의 건설 :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m^2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여항시설, 항만시설, 10만 m^2 이상 또는 준설량 20만 m^2 이상의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 도로의 건설 : 4km이상의 도로의 신설·확장, 2차로 이상으로서 10km 이상
- 수자원의 개발 : 만수면적이 2천만 m^2 이상 하천부속물 중 댐 또는 하구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만수면적이 2백만 m^2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m^2 이상 저수지, 보 또는 유지
- 1km 이상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km이상 삭도·궤도
- 공항의 건설 : 길이 500m 이상, 면적 20만 m^2 이상 비행장·활주로·공항개발 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하천중심 길이 10km 이상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30만 m^2 이상, 환경보전지역에서는 3만 m^2 이상
- 관광단지의 개발 : 총용지면적이 30만 m^2 이상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10만 m^2 이상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및 공원시설, 25만 m^2 이상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 산지의 개발 : 25만 m^2 이상 묘지조성, 30만 m^2 이상 초지조성, 20만 m^2 이상 그 밖의 산림훼손, 노선 총길이 8km이상의 임도설치 사업
- 특정지역의 개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중 20만 m^2 이상의 특정사업,
- 25만 m^2 이상 체육시설, 30만 m^2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0만 m^2 이상의 청소년 수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시설의 설치 : 최종처리시설로 매립면적이 30만 m^2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m^2 이상,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 1일 100kl이상 분뇨처리시설

- 33만 m^2 이상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도시계획구역내외, 비행장의 신설, 500m 이상 활주로 등 군용항공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10만 m^2 이상 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 상수원보호구역의 2만 m^2 이상 하천 및 연안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 이내에서는 5만 m^2 이상, 10만 m^2 이상 산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km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km 이내의 지역)에서의 채취사업으로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 채취 면적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m^2 이상, 그밖의 지역의 경우 3만 m^2 이상, 해안 골재의 경우 채취면적이 25만 m^2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m^2 이상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2) 평가지표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각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 대기, 소음 및 수질별로 구분됨
 - 대기 :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등의 일정기준 이하
 - 소음 :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 낮과 밤을 구분한 일정기준 이하
 - 수질 : 하천, 호소, 해역, 이용목적별로 구분하여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량, 총대장균군, 인, 질소의 일정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로 : 여기서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함

- 지역별 오염총량 기준
-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 규정되지 않은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의평가를 시행

<표 4-1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구분	내용
평가서 초안의 작성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과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 방안,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공람을 실시함
주민의견수렴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7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공람장소, 공람개요 등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은 15일 이내에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최종평가서 작성	- 구체적인 환경현황조사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의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의 인·허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함
협의단계	- 작성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 기관에 의해 환경부에 협의 요청.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 보완 등의 조치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확인단계	-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의무 부과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됨 -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장현지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는 사업자나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가능

(3) 평가방법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통합평가법」에 따라 교통·인구·재해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사업자가 작성 및 제출한 평가서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평가함

3)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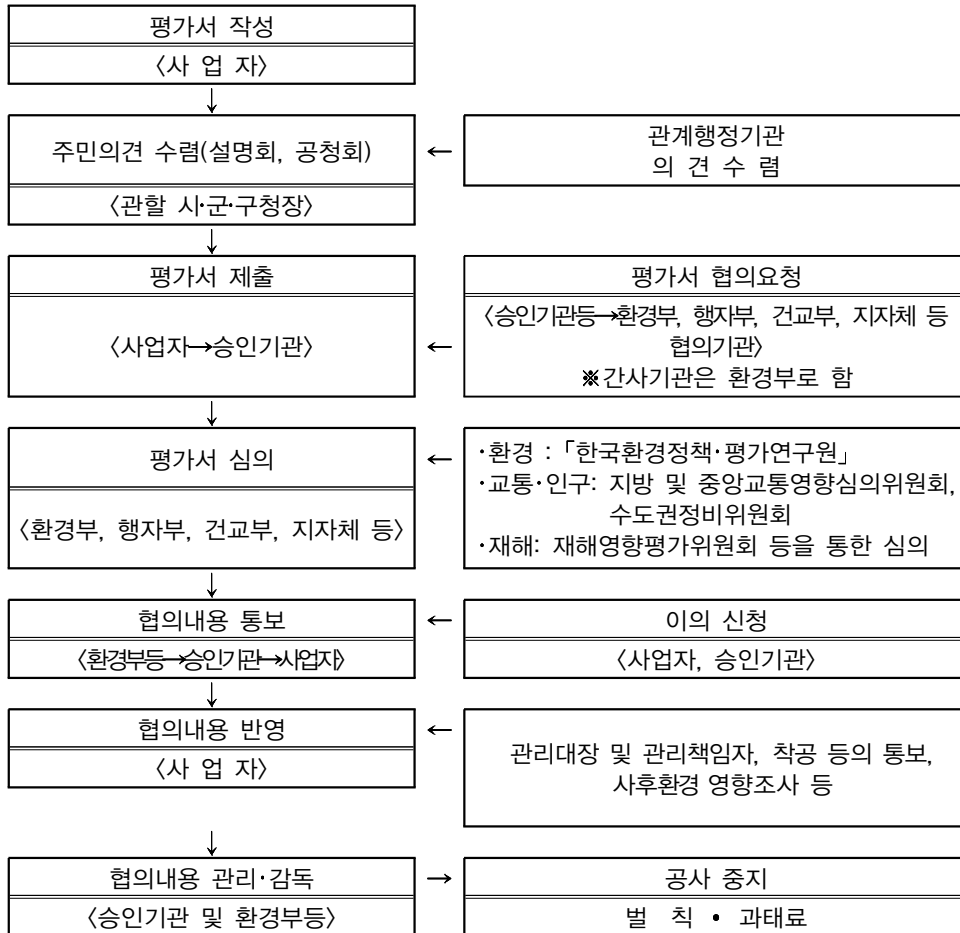
(1)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환경부이나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즉, 독립기구로 설치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통합평가법」에 따라서 교통·재해·인구 등의 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즉, 평가서 작성→주민의견수렴→평가서 제출→평가서 심의→협의내용 통보→협의내용 반영→협의내용 관리·감독 등의 절차를 거침

<그림 4-10>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3)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 1. 1)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령)

제3절 외국 유사제도의 사례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1) 관련법제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도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절차와 지침 등의 세부내용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환경질위원회(CEQ: 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에서 규정하고
 - 지방정부는 NEPA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CEQ NEPA Regulation 및 가이드언스를 참고하여 각 주(State) 및 시(city)에서 관련법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뉴욕주(State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뉴욕시(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등이 그것임

2) 조직체계

(1) 감독 및 검토기관(Oversight Agencies)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감독 및 검토기관으로는 CEQ와 EPA의 2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 CEQ는 NEPA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연방기관의 환경정책 수립과 NEPA의 수행을 감독하며, 구체적 기능으로는 NEPA와 관련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 주관기관 결정에서의 분쟁해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관간 분쟁조정,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등을 수행함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연방기구로 본청과 12개의 지역사무가 있으며,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함

(2) 환경영향평가의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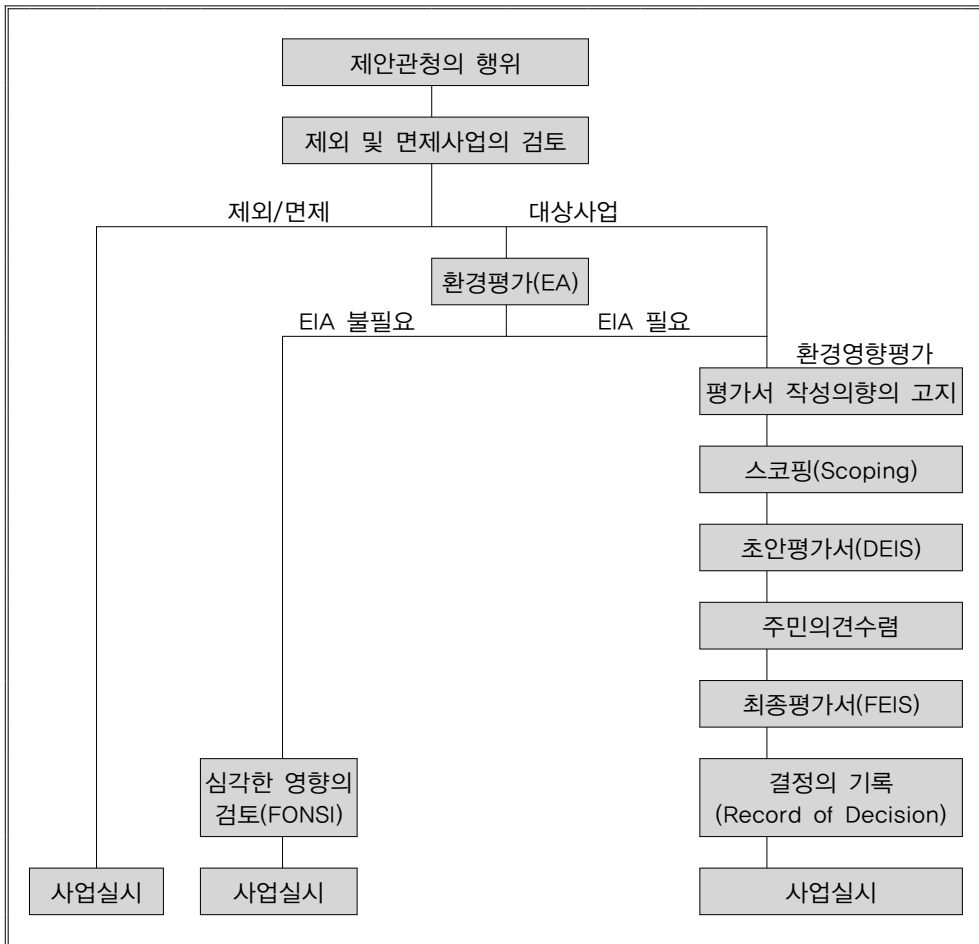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의 수행기관으로는 사업주관기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음
 - NEPA의 수행기관 :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한 NEPA는 의회와 법원 및 대통령기관을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에 적용되며, 이들 연방기관은 NEPA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과 다른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관기관(Lead Agency) : 주관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감독에 책임을 지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연방기관을 포함하여 연방과 주 및 지방기관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 협조기관(Cooperating Agency) : 주관기관이 아니면서 제안된 행위와 관련한 법적 관할권을 가진 기관 또는 제안된 행위와 환경적인 영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스코핑 과정에 참여하고, 협조기관의 전문적 영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대한 회신과 주관기관의 요청 등에 대해 지원함
 - 지방정부 : 뉴욕주 및 시의 경우 환경담당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일을 담당함

3) 추진절차

-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상여부의 결정, 평가항목 및 범위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의 의견수렴, 평가서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침
 - 우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한 제외범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평가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및 해당지역 주민, 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함

- 이후 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평가서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관기관은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관련 협조기관에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함
- 다만, 평가 이후에 결정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에 의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송대상은 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절차 및 평가항목의 누락여부이므로 가능한 다수의 평가요소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음

<그림 4-1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4) 평가체계

(1)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스코핑(scoping)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즉,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등 자연·생활환경 요소 외에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으로 인한 인구변동, 산업구조변동, 역사·문화적 가치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2) 평가기법

- 전략적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통상의 EIA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며, 계획수립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검토를 실시함
 - 광범위한 연방의 행위에 대하여 PEIS를 작성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에 대한 EIS작성시 PEIS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참조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개별사업 단위에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적 평가방법으로 EIS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1) 관련법제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1997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거쳐 왔음
 - 1972년 「각종 공공사업에 관계되는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각의 요해」로 처음으로 도입되어, 이후 「항만법(1973년)」, 「공유수면매립법(1973년)」 등을 거쳐 1997년에 전술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음
 - 이후에도 각종 분야별 정부정책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의 확대 및 보완이 추진되어 왔음

<표 4-16> 일본 환경정책분야의 주요 동향

구 분	내 용
2000	-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기본법 성립
2002	- 토양오염대책법 성립
2003	-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기본계획의 내각회의결정
2005	- 교토(京都) 의정서발효 및 교토(京都) 의정서목표달성 계획의 내각회의결정
2006	- 제3차 환경기본계획의 내각회의결정
2007	- 21세기 환경건국 전략의 내각회의 결정 - 제3차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내각회의 결정
2008	- 생물다양성기본법 성립

-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는 조례의 제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14개의 정령지정 도시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관련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업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4-17> 일본의 조례규정 대상사업 예시

구 분	내 용
도로(일반국도)	- 오사카부 : 4차선 이상·3km 이상 - 동경도·나고야시 : 4차선이상·1km 이상
철도	- 가나가와현 : 1km 이상 - 오사카부 : 3km 이상
토지구획정리	- 미에현 : 20ha(용도지역 50ha, 특별지역 10ha) - 후쿠오카시 : 30ha

2) 조직체계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주체가 각각 관장하는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즉, 환경영향평가에 관여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주민 등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관련부서임

- 환경청의 환경대신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스크리닝과 스코핑 및 사후관리의 각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도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반과정을 관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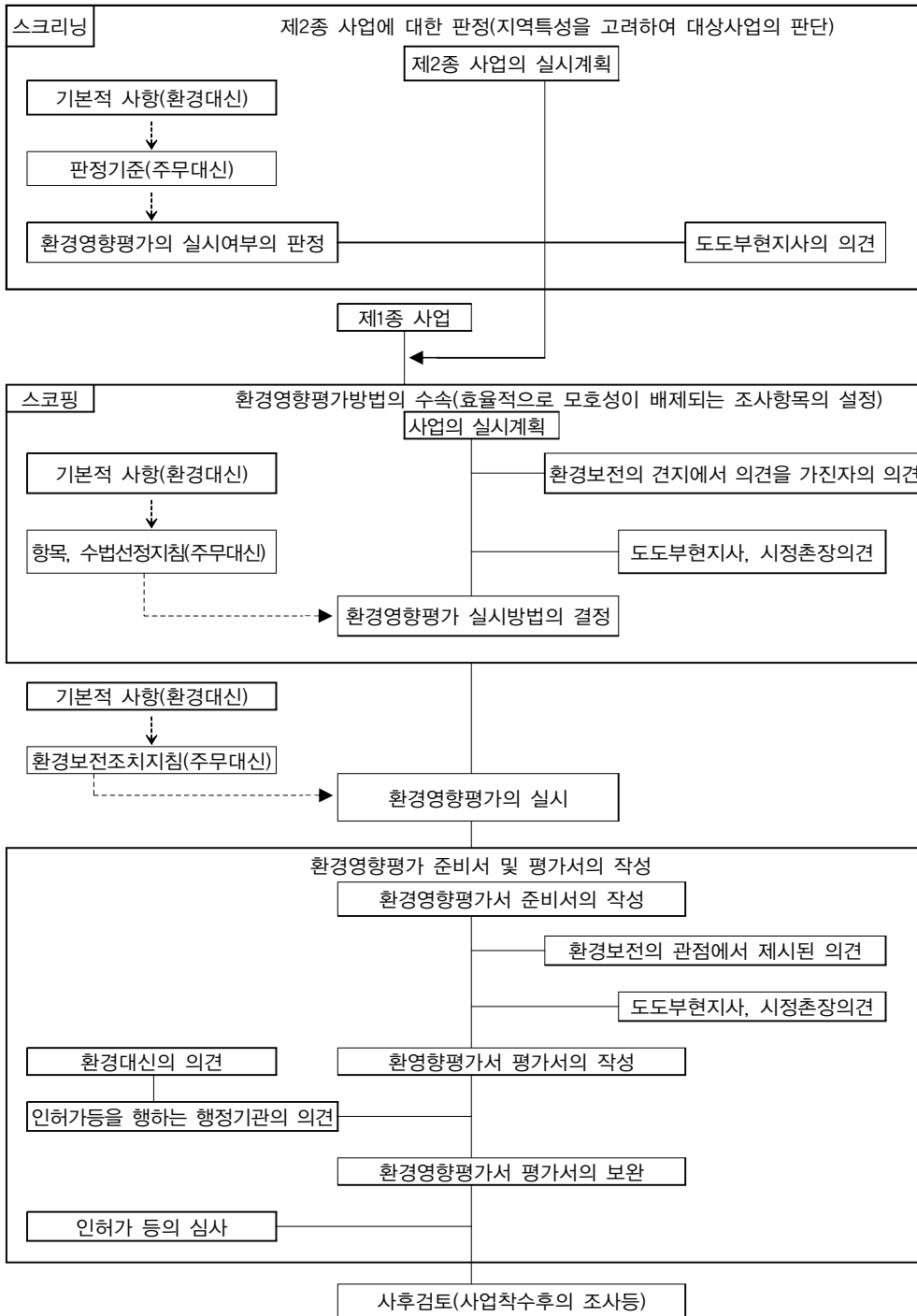
3) 추진절차

- 환경영향평가의 추진절차는 제2종 사업의 판정과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의 절차,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절차 등으로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각 단계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제시할 수 있음
- 제2종 사업의 판정은 주관 행정기관이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
 - 대체적으로 제2종 사업은 제1종 사업대상 규모의 75% 이상인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해당사업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듣고, 사업내용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판정함
-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즉, 대상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조사 등의 수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방법서를 작성하고, 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장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임
 - 이는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종래와 같이 전국에 획일적인 항목 및 수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즉, 사업자는 사업실시 전에 환경영향의 조사, 예측 및 평가와 병행하여 환경보전대책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장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 이러한 절차는 종래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나, 평가항목의 확대와 새로운 평가관점의 제시 등의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즉,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절차에 기초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환경성 대신은 필요에 따라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환경보전상의 의견을 제출하며, 해당 행정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경보전상의 의견을 제출하며, 사업자는 제출된 의견을 근거로 평가서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함
 - 환경성 대신은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에 관한 모든 대상사업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자가 평가서의 보완을 하는 것이 최근의 개선내용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72년 각의요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제도에 준하여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요청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

<그림 4-1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4) 평가체계

(1) 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각 의결정요강과 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도로, 댐, 철도, 비행장, 발전소 등 규모가 큰 경우에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에서 실시하거나 인허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들이 포함 되어 있음

<표 4-18>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각의평가의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사업의 종류	제1종 사업의 규모	제2종 사업의 규모
1. 도로의 신설	1. 도로		
- 고속자동차국도 - 수도고속도로, 阪神고속도로, 지정도시고속도로(4차선 이상) - 일반국도(4차선 10km이상)	- 고속자동차 국도 - 수도고속도로 등 - 일반국도 - 대규모 임도	전체 전체(4차선) 4차선 10km이상 2차선 20km이상	- - 7.5km이상 10km미만 15km이상 20km미만
2. 댐의 신축 및 기타 하천공사	2. 하천		
- 댐(담수면적 200ha이상, 일반하천) - 건설성 소관의 방죽(신축, 개변 후 담수면적 100ha이상) - 호소개발(토지개변면적 100ha이상) - 방수로(토지개변면적 100ha이상)	- 댐 - 방죽 - 호소수위조절시설 - 방수로	담수면적 100ha 면적 담수면적 100ha 면적 개변면적 100ha 면적 개변면적 100ha 면적	75ha이상 100ha미만 75ha이상 100ha미만 75ha이상 100ha미만 75ha이상 100ha미만
3. 철도의 건설	3. 철도		
- 신간선 철도	- 신간선철도(규격신선 포함) - 보통철도 - 궤도(보통철도 해당)	전체 10km이상 10km이상	- 7.5km이상 10km미만 7.5km이상 10km미만
4. 비행장(활주로 2500m 이상)	4. 비행장	활주로길이 2500m이상	1875m이상 2500m미만

각의평가의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사업의 종류	제1종 사업의 규모	제2종 사업의 규모
	5. 발전소		
	- 수력 - 화력(지열 이외) - 화력(지열) - 원자력	출력 3만kW이상 출력 15만kW이상 출력 1만kW이상 전체	2.25만이상 3만kW미만 11.25만이상 15만kW미만 7500만이상 1만kW미만
5. 매립·간척 - 면적 50ha이상 매립·간척 - 면적 30ha이상 폐기물 최종처리장	6. 폐기물최종처리장	30ha이상	25ha이상 30ha미만
	7. 공유수면의 매립 및 간척	50ha이상	40ha이상 50ha미만
6.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 100ha이상)	8. 토지구획정리사업	100ha이상	75ha이상 100ha미만
7. 신주택시가지개발사업 (면적 100ha이상)	9. 신주택시가지 개발사업	100ha이상	75ha이상 100ha미만
8. 공업단지조성사업 (면적 100ha이상)	10. 공업단지조성사업	100ha이상	75ha이상 100ha미만
9. 신도시기반정비사업 (면적 100ha이상)	11. 신도시기반조성사업	100ha이상	75ha이상 100ha미만
10.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 (면적 100ha이상)	12. 유통업무단지조성 사업	100ha이상	75ha이상 100ha미만
11. 특수법인의 토지조성	13. 택지의 조성사업(택지는 주택지, 공장용지를 포함)		
- 농용지정비공단 (면적50ha이상) - 환경사업단 (면적 100ha이상) - 주택·도시정비공단 (면적 100ha이상) - 지역진흥정비공단 (면적 100ha이상)	- - 환경사업단 - 주택·도시정비공단 - 지역진흥정비공단	- 100ha이상 100ha이상 100ha이상	- 75ha이상 100ha미만 75ha이상 100ha미만 75ha이상 100ha미만

(2) 평가기법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대상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평가를 실시함
 - 즉, 사업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대상항목별로 조사, 예측 및 평가

- 를 실시하고, 이를 관계 도도부현지사와 시정촌장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공고 및 공람을 시행함
- 평가대상 항목은 법제정 전에는 5가지 요소로 한정되었지만, 현행의 환경법에서는 재검토를 통해서 평가항목의 확대를 도모하였음

<표 4-19> 일본의 환경영향 평가항목

환경요소의 구분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의 양호한 상태의 보유	대기환경	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
		그 외
	물환경	수질
		하천바닥질
		지하수
		그 외
	토양환경·그 밖의 환경	지형·지질
		지반
		토양
그 외		
물의 다양성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식물	
	동물	
	생태계	
사람과 자연과의 풍부한 접촉	경관	
	접촉활동의 장소	
환경에의 부하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3.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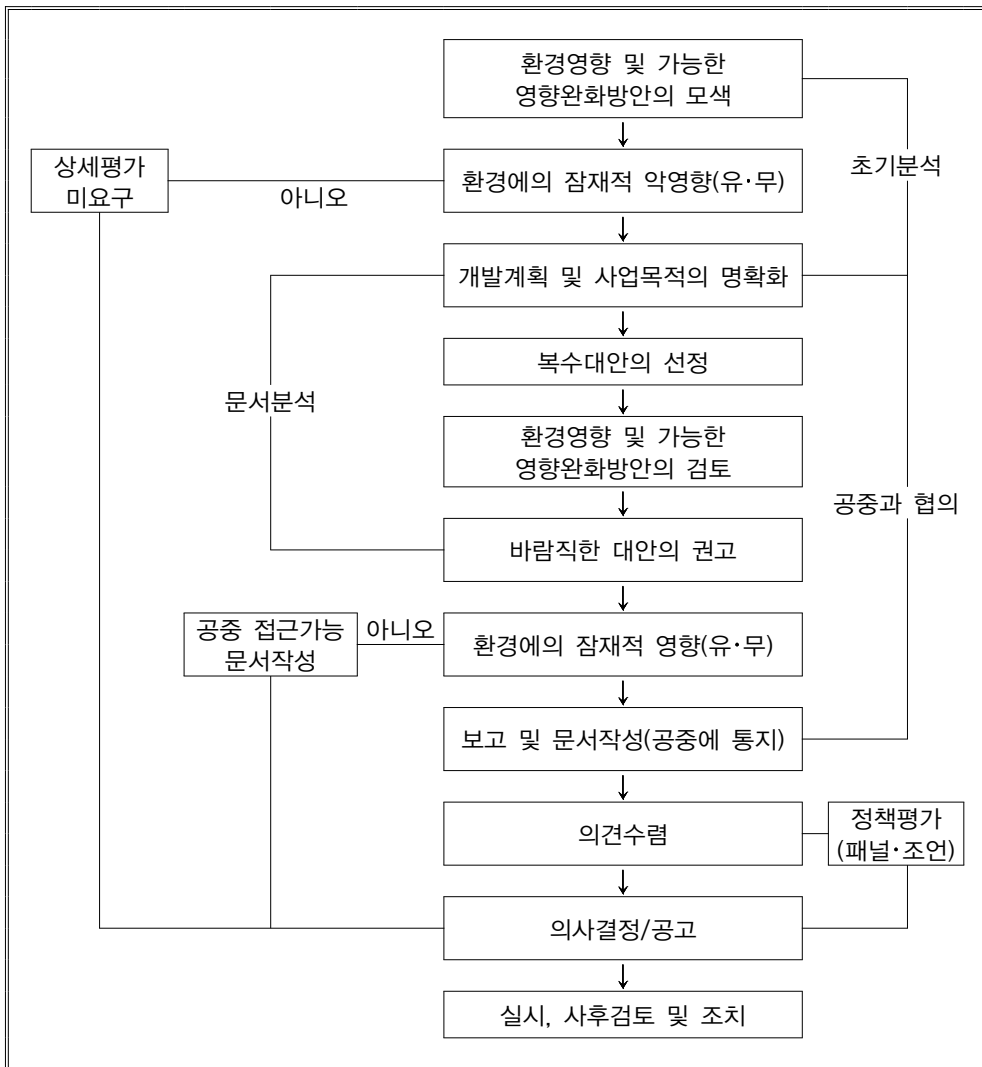
1) 관련법제

-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는 1992년 제정된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근거하고 있음

- 당초 1973년에 각의결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적인 구속력과 운용조건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가 시도되어 1992년에 전술한 법률이 제정된 것임

<그림 4-13>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 개념도



- CEAA에 의한 심사단계는 주관관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검토 사항을 결정하여 절차관리를 하는 환경영향평가인 자기관리 환경영향 평가 있으며, 또한 주무관청 및 환경성 장관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조정자와 위원회가 검토하는 공개심사(Public Review)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단계가 구분되어 있음

2) 조직체계

-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의 관련주체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
 - 내각 : 정책이 내각에 제출될 때에 각료는 이들 제안에 대해 환경 측면을 배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책임을 짐
 - 장관 : 각 장관들은 정책이 초래할 환경영향이 정부의 광범위한 환경 목적 및 지속가능한 개발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짐
 - 환경부장관 : 환경부 장관은 캐나다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틀의 구축 및 정책제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관해 리더십을 가지며, 다른 장관에게 충고할 책임을 짐
 - 환경평가청 : 환경평가청은 연방정부의 정책제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을 촉진함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부활동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짐

3) 추진절차

-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의 추진절차는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짐
 - 즉, 스코핑, 평가서작성, 평가서심사 및 의사결정의 4개 단계를 거치나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8개의 과정으로 구성됨

(1) 스코핑(Scoping)

- 제1단계에서는 주무성청이 대상으로 할 환경영향과 범위를 정하고, 검토할 사업활동과 관계자의 범위 등을 결정하여 제시함
 - 이 과정에서는 복수의 인허가 조정 등도 수반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재작업의 여지를 없애기도 함

(2) 환경영향평가

- 제2단계는 주무성청에 의한 사업의 환경영향예측으로 사업내용의 해설, 환경현황의 해설 및 사업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검증 등 3개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 사회경제,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함
 - 주무성청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3자, 즉 시민이나 외부전문가, 다른 연방성청, 주 등 그 밖의 기관이 관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3) 환경보전대책의 검토

- 제3단계에서 주무성청은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경제적 실행 가능한 조치를 강구함
 - 환경보전대책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거나 제어하는 것이되, 이전, 수복, 보상 등 다른 수단에 의해서 환경에 미친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며, 환경보전대책의 검토과정에서 전문가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음

(4) 악영향의 심각도 결정

- 제4단계에서 주무성청은 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함
 - 이러한 결정은 주무성청이 사업을 다음단계로 진행시킬 것인지, 또는 조정이나 위원회의 상세한 심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됨

(5)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제5단계에서 주무성청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근거해서 스크리닝보고서 또는 포괄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을 보증함
 - 보고서에는 결론에 도달한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고, 환경보전대책의 명확한 제시와 동시에 주무성청이 필요로 하는 사후 조치의 요건이 정리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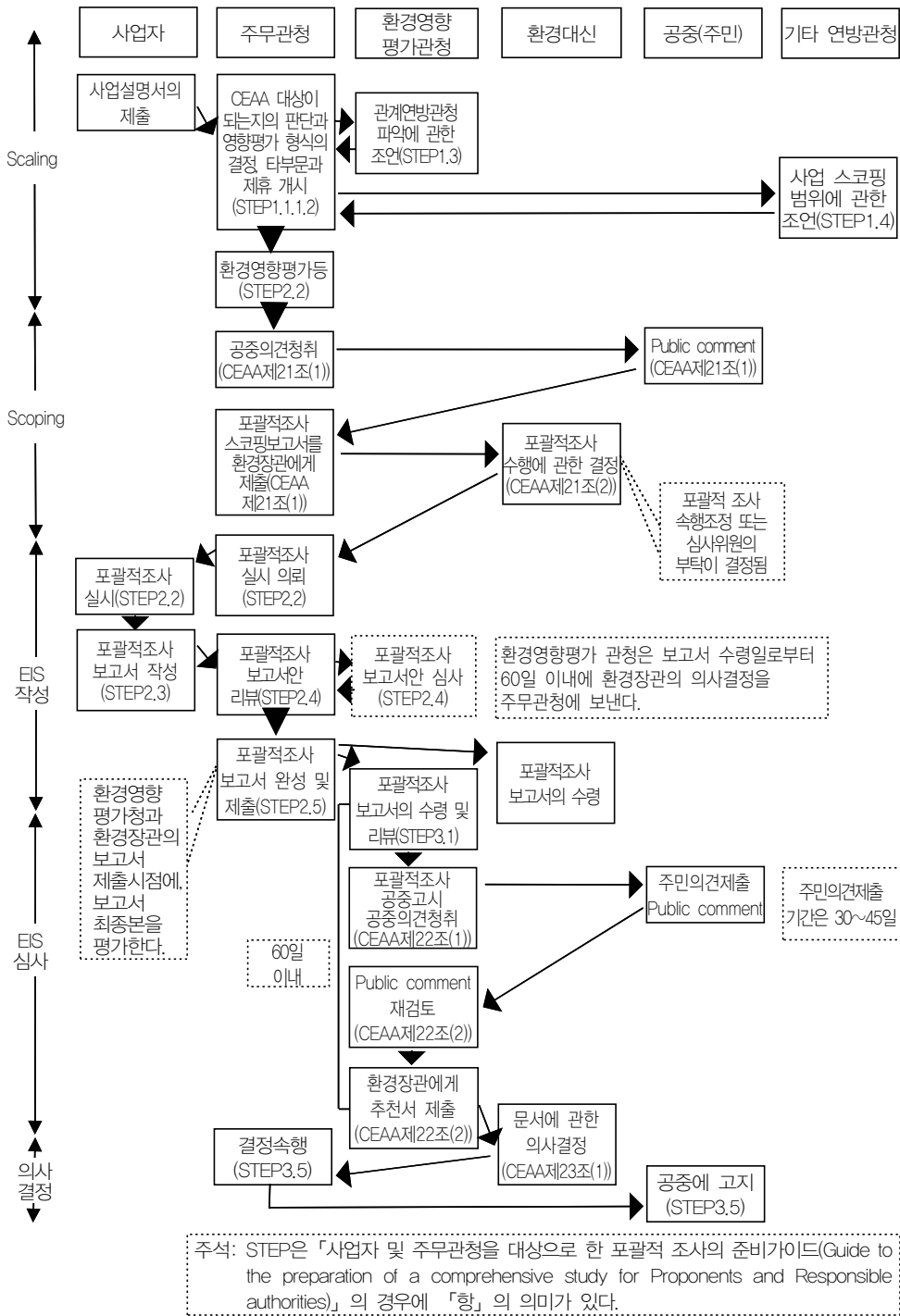
(6)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심사

- 보고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성청의 의견이 수용되어야 하고, 주무성청은 필요한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포괄적 조사의 경우에 주무성청은 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청에 제출하고, 동청은 보고서를 공람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심사하여 환경장관에 조언을 제시함

(7) 의사결정

-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심사완료 후에 주무성청이 해당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됨
 - 즉, 연방이 제안자로서 사업을 실시하든지 또는 사업실시에 필요한 자금, 면허, 토지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그림 4-14>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의 추진절차



(8) 의사결정 후의 조치

- 의사결정이 확정된 후에 주무성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무적 조치를 시행함
 - 즉, ① 일련의 활동에 관한 고지를 실시하고, ② 규칙에 따른 적절한 사후조치를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③ 적절한 환경보전대책이 실시되도록 보증하는 것임

4) 평가체계

(1) 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연방관청이 사업의 제안자인 경우, 연방관청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그 제안자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또는 자금공여를 보증한 경우, 연방관청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인허가 또는 면허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등 4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대상목록은 CEAA의 시행규칙에 따라 ① 대상리스트, ② 제외리스트, ③ 법률리스트, ④ 포괄적 조사리스트로 구분됨

(2) 평가기법

-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는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대상을 중심으로 주무성청이 직접 평가를 실시함
 - 즉, 해당사업의 내용해설과 환경현황의 해설을 근거로 사업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되, 포괄적 조사에서는 누적적 영향의 예측과 재생 가능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제4절 유사제도의 분석결과

1. 분석결과의 종합

- 전술한 국내 유사제도의 분석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즉, 영향평가의 분야가 각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목적에서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의 내용들이 비교적 유사한 구조성을 보이고 있음

<표 4-20> 국내사례의 분석결과 종합

구분	평가목적	평가체제			운영체제		
		평가대상	평가 지표	평가 방법	평가주체	평가절차	근거법령
교통 영향평가	유발교통량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100시간당 교통량 발생시설	인구증가율 등 3개 분야	자료심사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심의 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지원)	평가서작성→주민의견수렴→평가서제출→평가서심의→ 협의내용통보→협의내용반영→ 협의내용관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 지침)
규제 영향평가	규제영향도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중앙행정 기관의 신설 및 강화규제	8개 요소 20개 항	자료심사	규제개혁위원회(자체심사 선행)	자체심사→규제심사청구→예비심사→심사완료→해당기관통보→ 재심사요청→재심사완료→권고→ 처리결과제출→법제처심사→ 국무회의상정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균형발전 영향평가	국가재정사업의 균형발전도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전체 국가재정사업(제외사업 규정)	균형발전기 여도 등 3개 항목	자료심사	균형발전평가단	평가지침서제시→균형지표설정→ 지표확정→체크리스트평가서작성→ 평가서송부→균형발전영향평가→ 평가서송부→평가결과예산반영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술 영향평가	신규기술 영향도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기술	3개 항	자료심사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기술영향 평가위원회(과학기술부))	대상기술추천→대상기술선정위원회검토→관계부처협의→대상기술선정→ 기술평가추진계획수립 및 평가→ 평가결과검토→기술영향평가결과심의→평가결과반영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부패 영향평가	법규상 부패유발요인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3개 항목 9개 평가요소	자료심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기초자료작성→의견수렴→부처별 자체심사→평가요청→청렴위원회심사→부처별통보→재심사요청→ 재심사완료→통보→처리결과제출→ 법제처심사→국무회의상정	부패방지법 (시행령)

구분	평가목적	평가체제			운영체제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절차	근거법령
성별 영향평가	성별영향도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법령, 정책, 사업	3개 항목 9개 요소	자료심사	여성가족부	평가대상선정→분석평가서작성→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분석평가결과종합	여성발전기본법
인구 영향평가	인구영향도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수도권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	인구집중 수준	자료심사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심의 위원회 및 수도권장비위원회 지원)	평가서작성→주민의견수렴→ 평가서제출→평가서심의→ 협의내용통보→협의내용반영→ 협의내용관리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인구영향평가 지침)
재해 영향평가	재해영향도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설치, 산지개발, 유수지매립 등	5개 항목	자료심사	소방방재청(재해 영향평가위원회)	평가서작성→주민의견수렴→ 평가서제출→평가서심의→ 협의내용통보→협의내용반영→ 협의내용관리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재해영향평가 지침)
환경 영향평가	환경오염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각종 개발사업(제의 사업규정)	대기, 소음, 수질별 법적 환경기준	자료심사	환경부(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평가서작성→주민의견수렴→ 평가서제출→평가서심의→ 협의내용통보→협의내용반영→ 협의내용관리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 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지침)

-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관련법제는 독립적 법제를, 조직체계는 중앙정부 단위의 독립기구를,
 - 추진절차는 대상결정과 평가서작성 및 검토의 과정에서 공통적 특성을 보이나, 평가대상은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21> 외국사례의 분석결과 종합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관련법제	-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환경영향평가법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조직체계	- 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청	- 환경평가청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
추진절차	- 평가대상결정→평가항목 및 범위결정→평가서작성→주민의견수렴→평가서검토	- 평가대상결정→환경영향 평가방법결정→환경영향 평가준비서작성→환경영향평가서작성→환경영향평가서보완→사후 검토	- 평가대상범위결정→평가서작성→평가서심사→의사결정
평가대상	- 자연 및 생활환경요소 - 인구변동 - 산업구조변동 - 역사·문화가치변동	- 도로신설 - 댐신축 및 하천공사 - 철도건설 - 비행장 - 매립 및 간척 - 토지구획정리사업 - 신주택시가지개발사업 - 공업단지조성사업 - 신도시기반정비사업 -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 - 특수법인의 토지조성	- 연방관청이 사업제안자인 사업 - 연방관청이 출자 또는 자금 공여한 사업 - 연방관청이 인허가 또는 면허한 사업 - 연방관청이 그밖의 행위를 한 사업

2. 사례분석의 시사점

- 전술한 사례분석의 결과에서 국내 유사제도를 대상으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 유사제도는 동일한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여건의 차이에 따른 내용의 상이성이 뚜렷해 시사점 도출에서는 제외하였음
- 국내 유사제도의 영향평가를 대상으로 각 평가요소별 설계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평가목적은 부정적 영향도 분석과 개선대책 수립의 공통적 구조를 보이고, 평가대상은 평가목적에 따라 사업대상과 제도대상의 이원적 구조이며, 평가지표는 평가대상에 따라 차별적이며, 평가방법은 자료심사의 일원적 구조이며, 평가주체는 소관사무의 주무부처이고, 평가절차는 평가서 작성과 평가서 심사 및 평가결과 반영의 동일구조이며, 근거법령은 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음

<표 4-22> 사례분석의 시사점

구분		내용
평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국내 영향평가 공통적 구조 - 분야별 부정적 영향도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의 구조형성
평가체제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 기준의 이원적 구조 - 1차 사업대상 : 교통, 균형발전, 기술, 인구, 재해, 환경 - 2차 제도대상 : 규제, 부패, 성별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의 다원화 - 평가목적 및 평가대상에 따라 차별화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의 일원화 - 자료심사 : 전체 영향평가 공통
운영체제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무의 주무부처 - 평가대상 소관사무의 주무부처 - 전문성확보를 위한 별도기구 지원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절차구조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심사 → 평가결과 반영의 논리구조 - 일부 영향평가의 자체평가 절차 설치(규제, 부패 등)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행정규제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부패방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 별도의 시행령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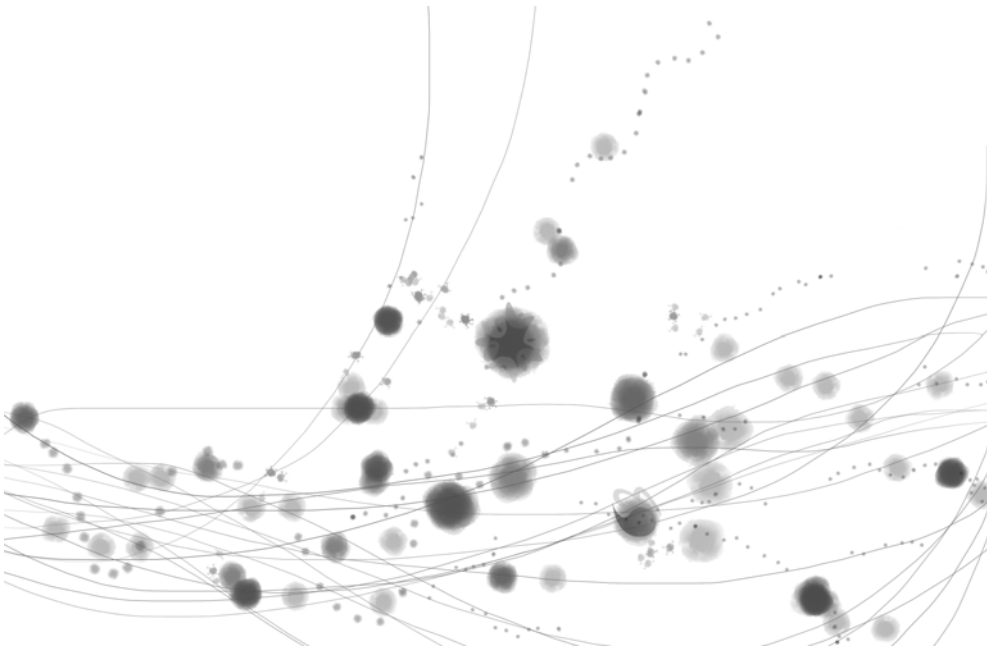
제 5 장

국가정책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

제1절 대안설계의 원칙과 전략

제2절 평가체제의 설계

제3절 운영체제의 설계



제 5 장

국가정책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

제1절 대안설계의 원칙과 전략

1. 대안설계의 원칙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의 수립에 따른 지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음
 - － 따라서 대안설계는 제도의 도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성과 예방성 및 객관성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 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 즉, 지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하는 모든 국가정책은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대안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임
- 예방성의 원칙은 국가정책이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한다는 것임
 - － 즉, 제도도입의 근본적 목적인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대안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객관성의 원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검증의 결과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임
 - － 즉, 영향평가의 결과는 환류되어 해당 국가정책의 조정 및 변경을 초래하므로 합리적 절차를 거쳐 객관성이 확보되는 내용일 필요가 있음

<표 5-1> 대안설계의 원칙

구 분	내 용
포괄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의 포괄성 - 부정적 영향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모든 정책포함
예방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의 예방성 - 부정적 영향의 사전 검증
객관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의 객관성 - 영향평가 결과의 객관적 신뢰성 확보

2. 대안설계의 전략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평가체제라는 점과 기존에 유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에 기초함
 - 즉, 대안설계는 대안의 내용적 특성과 사례적 특성에 기초하여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우선,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대안설계는 평가체제의 기본구조에 근거하여 적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특정대상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안설계는 원칙적으로 평가체제의 기본구조가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다음,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대안설계는 유사제도의 일반적 설계원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와 동일한 맥락에서 도입된 기존의 유사제도가 존재하므로 사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준용하여 대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대안설계를 위한 전술한 전략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초함

- 즉, 기본적으로 평가체제의 기본구조에 근거하여 대안설계의 시안을 검토하고, 이를 대상으로 유사제도의 일반원리를 적용하여 최종대안을 도출하는 것임

<표 5-2> 대안설계의 전략

구 분	내 용
내용적 특성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체제의 기본구조 반영 - 평가제도의 설계이므로 평가체제의 기본구조 적용 필요
사례적 특성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제도의 일반적 설계원리 반영 - 동일맥락의 다수사례의 일반적 설계원리 적용 필요

제2절 평가체제의 설계

1. 평가목적 설계

1) 설계초점

- 평가목적은 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나 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설계의 초점임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설계의 초점이 있음
 - 다만, 평가목적은 일반적으로 평가실시의 이유를 내용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임

2) 검토대안

(1) 제1안 : 부정적 영향요소 파악

- 제1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목적을 국가정책의 수립과정

에서 지방에 미칠 부정적 영향요소를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국한하는 방안임

- 동 대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목적을 협의로 규정한 것으로 지방에 미칠 부정적 영향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평가목적으로 설계하는 것임

(2) 제2안 : 부정적 영향요소 파악 및 개선대책수립

- 제2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목적을 국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에 미칠 부정적 영향요소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부정적 영향요소를 해소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방안임
- 동 대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목적을 광의로 규정한 것으로 지방에 미칠 영향요소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까지를 평가목적으로 설계하는 것임

3) 판단논거

(1) 제도도입 취지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정책적 취지는 국가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제약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임
- 이에 따르면,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지방의 부정적 영향요소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요소가 제거되거나 해소되어야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확보할 수 있음

(2) 기존제도 사례

- 기존의 유사제도 사례분석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9개 영향평가의 평가목적은 동일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즉,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 및 분석하여 사전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분야별 부정적 영향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의 수립을 평가목적으로 하고 있음

(3) 판단논거의 종합

- 평가목적의 설계를 위한 2개의 대안을 대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 기존제도 사례를 적용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즉, 제도도입 취지와 기존제도 사례에 비추어 2안이 1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음

<표 5-3> 평가목적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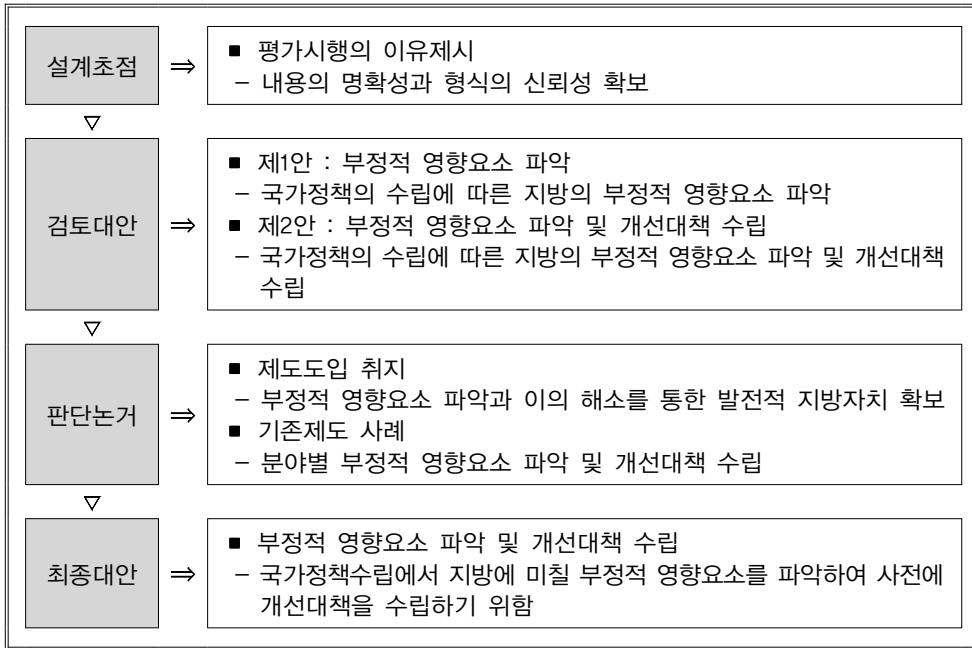
구분	1안	2안
제도도입 취지	2	3
기존제도 사례	1	3
종합	3	6

주 :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3, 2, 1로 표시.

4) 최종대안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목적은 전술한 제도의 도입취지와 기존제도의 사례를 준거로 다음과 같이 설계함
 - 즉,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국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에 미칠 부정적 영향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그림 5-1> 평가목적의 설계방안



2. 평가대상 설계

1) 설계초점

- 평가대상은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평가가 적용되는 대상을 의미하며, 따라서 평가대상의 적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한 설계초점임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 평가대상의 설계초점은 국가정책의 범위와 부정적 영향요소의 범위를 적정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임

2) 검토대안

(1) 대안의 유형구분

- 평가대상의 적정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기준으로 국가정책과 부정적

영향요소를 적용하면, 4개의 대안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즉, 국가의 법령+지방자치단체(Ⅰ 유형), 국가의 법령+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Ⅱ 유형), 국가의 법령·정책+지방자치단체(Ⅲ 유형), 국가의 법령·정책+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Ⅳ 유형) 등임

<표 5-4> 평가대상 대안의 유형

구분		부정적 영향요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국가정책	법령	Ⅰ	Ⅱ
	법령+정책	Ⅲ	Ⅳ

(2) 제1안 : 국가의 법령+지방자치단체

- 제1안은 국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안임
 - 즉, 동 방안은 평가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법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요소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는 것임

(3) 제2안 : 국가의 법령+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 제2안은 국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를 평가의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안임
 - 즉, 동 방안은 평가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법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요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것임

(4) 제3안 : 국가의 법령·정책+지방자치단체

- 제3안은 국가의 법령·정책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안임
 - 즉, 동 방안은 평가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법령과 더불어 정책까지 포함하고,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요소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는 것임

(5) 제4안 : 국가의 법령·정책+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 제4안은 국가의 법령·정책과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를 평가의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안임
 - － 즉, 동 방안은 평가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법령과 더불어 정책까지 포함하고,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요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것임

3) 판단논거

(1) 제도도입 취지

-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도입의 취지는 국가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여기서 국가정책에 의한 지방자치의 저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법령이 그 대상이 됨
 - － 또한 지방자치가 저해되는 상황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발생되므로 부정적 영향요소의 파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현실적 조건

- 평가대상의 설계에서는 실제 평가가 실시될 경우의 현실적 제약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국가정책 차원에서 법령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의 확대에 따른 평가작업의 현저한 증가와 더불어 각 중앙부처의 정책은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요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 사회를 포함시킬 경우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여타 영향평가인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등과 평가의 충돌 또는 중복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기존제도 사례

- 기존의 유사제도 분석에 따르면, 각 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평가목적에 따라 이원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즉, 국민생활의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국민생활의 편익에 이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이 배제된 국가의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4) 판단논거의 종합

- 평가대상의 설계를 위한 4개의 대안을 대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 현실적 조건 및 기존제도 사례를 적용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즉, 제도도입 취지와 현실적 조건 및 기존제도 사례에 비추어 1안이 여타의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음

<표 5-5> 평가대상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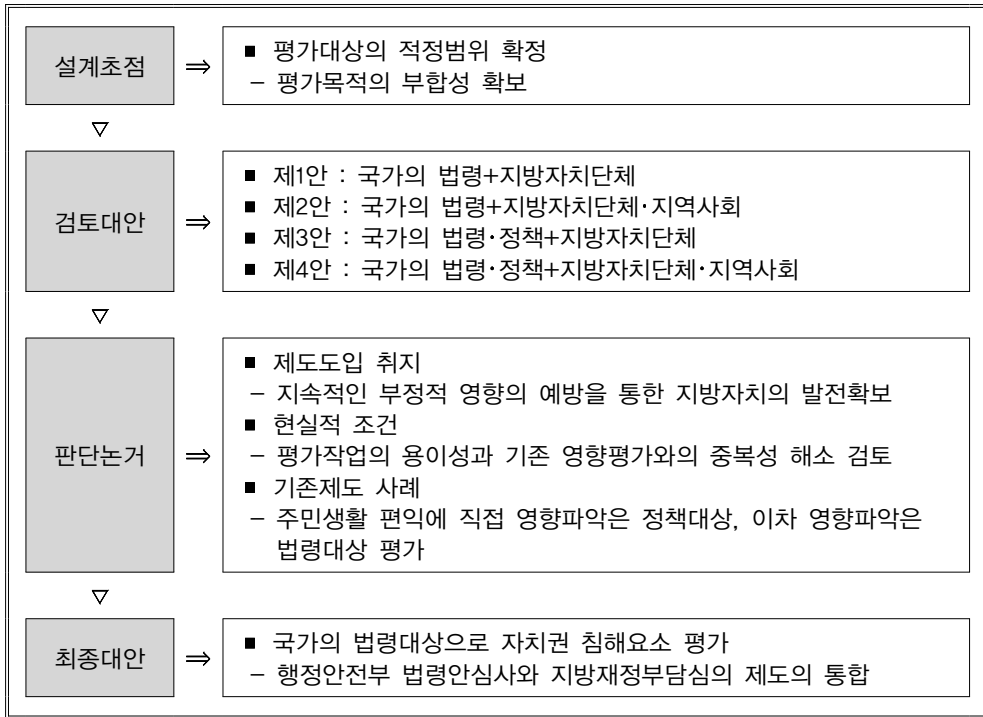
구분	1안	2안	3안	4안
제도도입 취지	3	1	2	1
현실적 조건	3	2	2	1
기존제도 사례	3	1	1	1
종합	9	4	5	3

주 :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3, 2, 1로 표시.

4) 최종대안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대상은 전술한 제도도입 취지, 현실적 조건 및 기존제도의 사례를 준거로 다음과 같이 설계함
 - － 즉,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국가의 법령을 중심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함
-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지방자치의 저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 따라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의 저해는 자치권의 침해로 측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인 자치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전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을 설계할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제도와의 조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법령안심사”와 “지방재정부담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국가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저해를 예방하는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를 도입할 시에는 전술한 행정안전부의 기존제도들은 기능 중복성을 고려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5-2> 평가대상의 설계방안



- 한편, 평가대상의 선정은 중앙부처가 입안하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함
 - 다만, 중앙부처별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법령은 평가대상 선정에서 제외함
 - 평가대상 법령은 기본적으로 자치권의 저해에 관한 것이므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의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주요 대상으로 함

<그림 5-3> (가칭)지방영향평가 체크리스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관명) 지방영향평가 대상선정 체크리스트</div>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	성명/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일간)
	입법예고	~	(일간)
	법제처심사	~	(일간)
붙임자료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세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자치권 관련내용 부재법령	□ 예 □ 아니오	
대상 법령	□ 자치입법권 관련내용 포함 법령	□ 예 □ 아니오	
	□ 자치조직권 관련내용 포함 법령	□ 예 □ 아니오	
	□ 자치행정권 관련내용 포함 법령	□ 예 □ 아니오	
	□ 자치재정권 관련내용 포함 법령	□ 예 □ 아니오	

- 전술한 대상법령별로 평가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계함
 - 자치입법권의 관련내용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이나 사무위임 또는 공동수행사무가 포함된 경우이고, 자치조직권의 관련내용으로는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담인력의 배치, 현행의 조직 설치 및 인력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이며, 자치행정권의 관련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료와 보고의 요구나 평가와

감독의 실시가 포함된 경우이며, 자치재정권의 관련내용으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비율 조정, 지방세 개편, 지방세의 특례 및 세율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증감, 자율적 재정운영권 제약 등이 포함된 경우임

<표 5-6> (가칭)지방영향평가 측정지표

대상법령	측정지표	해당여부
자치입법권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제개정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내용 - 법령의 제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을 규정하는 내용 - 법령의 제개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의 공동수행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 - 기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치조직권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설치를 수반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의 배치를 수반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직설치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내용 -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내용 - 기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치행정권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구를 수반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요구를 수반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실시를 수반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실시를 수반하는 내용 - 기타 자치행정권을 제약하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치재정권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조정을 수반하는 내용 - 지방세의 세제개편을 수반하는 내용 -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을 수반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증감을 수반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권을 제약하는 내용(지방채 발행, 지방공기업 설치 등) - 기타 자치재정권을 제약하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평가지표 설계

1) 설계초점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에 기초하여 평가대상을 측정하는 도구를 의미하며, 따라서 최적의 측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한 설계초점임
 -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 평가지표의 설계초점은 전술한 평가대상의 효과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는 것임
 - － 다만, 평가지표는 측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대표성 등의 제반특성 구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표설계의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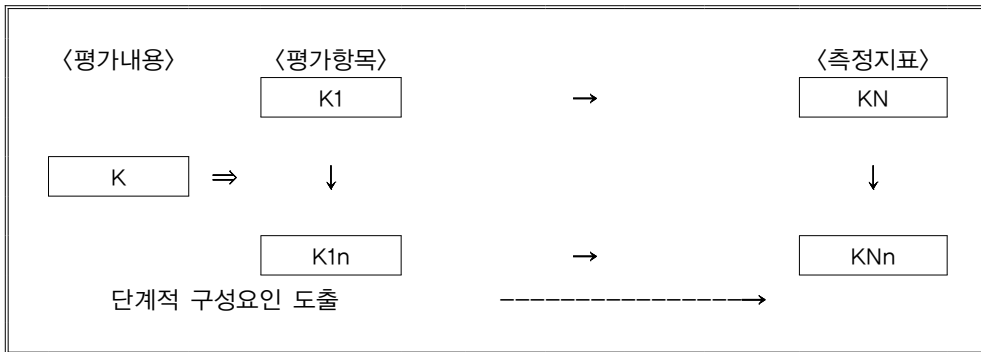
(1) 지표개발 방법

- 지표개발의 방법은 연역적·하향식 접근방법과 귀납적·상향식 접근방법으로 대별됨
 - － 연역적·하향식 방법은 평가내용을 확정된 후 이를 구성하는 주요요인들을 하향적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평가내용의 주요 구성요인들을 단계적으로 도출함으로써 평가내용에서부터 측정지표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 귀납적·상향식 방법은 평가내용을 확정된 후 필요한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이들을 유사한 범주로 유형화하면서 상향적으로 평가내용에 이르는 각 단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단계설정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음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평가내용의 주요 구성요인들의 점검을 통해 국가가 입안하는 법령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어 단계간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연역적·하향식 접근방법을 활용함

- 즉, 평가내용을 확정된 후 이를 구성하는 주요요인을 도출하는 작업을 단계별로 반복하여 최종적인 세부지표에 이르는 연역적·하향식 지표도출방법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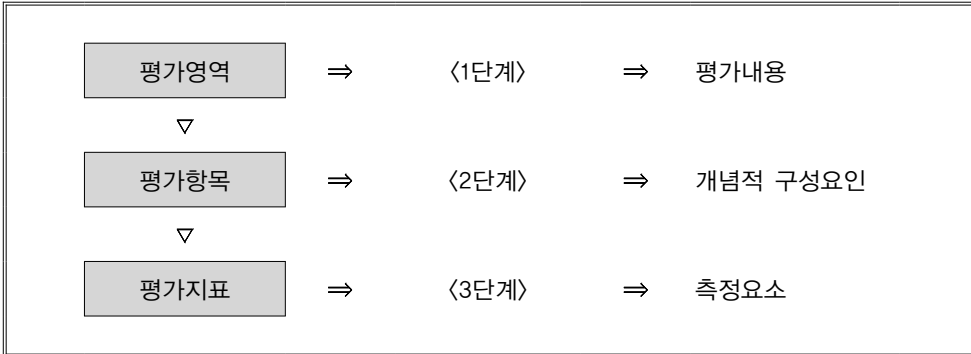
<그림 5-4> 연역적·하향식 지표개발방법



(2) 지표단계의 설정

- 지표단계는 평가대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측정치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 평가모형에 따라 단계설정이 달라짐
 - 예를 들면, 다수의 사업을 통합평가하는 기관평가모형은 다단계의 지표단계가 필요함에 비하여 단일사업을 평가하는 사업평가모형은 비교적 소수의 단계를 통해 측정치를 도출할 수 있음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국가의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단일사업평가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지표단계는 사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3개의 단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림 5-5> 지방영향평가의 지표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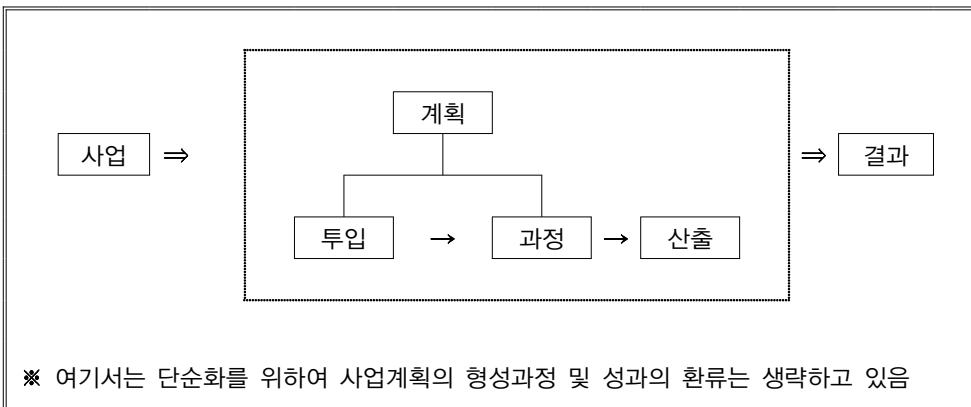


3) 평가지표의 도출

(1) 평가영역의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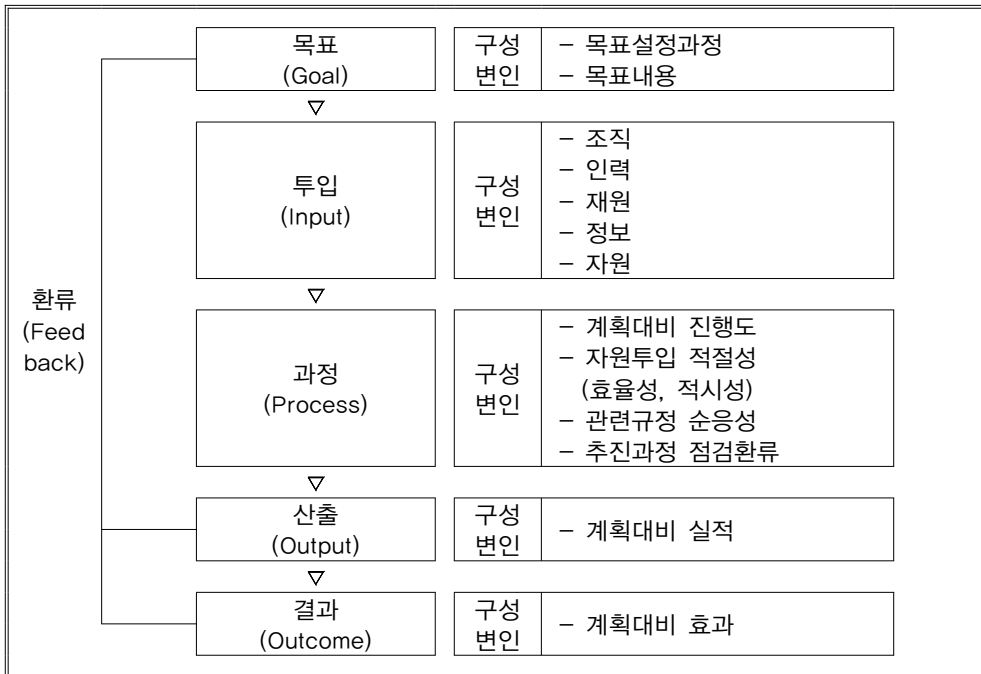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평가영역은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독립된 단계를 설정하여 평가영역을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함
 - 제반사업의 논리적 전개구조는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필요자원의 투입, 추진과정, 성과의 산출 및 결과 등으로 구성되고,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5-6> 사업의 논리적 전개구조



- 전술한 사업의 논리적 전개구조를 순차적으로 평면화하면, 아래와 같은 5 가지 과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제1과정 목표과정(Goal), 제2과정 투입과정(Input), 제3과정 추진과정 (Process), 제4과정 산출과정(Output), 제5과정 결과과정(Outcome) 등임
- 그러나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사업평가의 평가영역의 설계 구조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즉, 평가대상이 특정의 사업인 사업평가와 달리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국가의 법령안이 평가대상이고, 동 법령안은 특정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투입 이후의 과정이 생략된 계획에 해당됨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획의 타당성인 목표 타당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목표 타당성 가운데서도 지방자치의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임

<그림 5-7> 사업의 추진과정



- 이처럼 목표 타당성을 평가영역인 평가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은 각종 영향평가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이는 일반적인 사업 또는 정책평가와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함
- 전술한 논의결과에 따르면,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평가영역은 지방자치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선정되어야 함
 - 이러한 직접적 판단요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치권”으로, 이는 국가의 주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구역에 대상으로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임
 - “자치권”은 국가의 법령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2) 평가항목의 확정

- 평가항목은 평가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구성요소로 평가영역의 내용을 구성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독립적 단위체임
 - 일반적으로 평가항목의 확정은 평가영역을 구성하는 모든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평가성격에 적합한 요소를 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사업평가와 달리 평가영역의 개념적 구성요소가 도출되어 있음
 - 즉, 평가영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규정할 경우 자치권의 개념적 구성요소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임
 - 따라서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으로 확정함

(3) 평가지표의 확정

-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요소로, 평가항목의 전체내용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함
 - － 평가지표의 구비요건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특히 대표성과 측정가능성 및 개선가능성 등의 요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 즉, 평가지표는 평가대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대표성), 평가대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측정가능성), 평가대상의 개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함(개선가능성)
- 전술한 평가지표의 구비요건을 고려하면, 평가지표의 확정은 상정 가능한 평가항목별 측정요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한 구비요건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함
 - － 즉, 1차적으로 대표성의 요건을 구비한 평가지표들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측정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며, 3차적으로 개선 가능성의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함
- 그러나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정책 또는 사업평가와 달리 특정상태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에 부정적 영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도의 판단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 － 즉, 평가항목의 대표성의 확보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4) 평가지표의 종합

- 전술한 평가지표의 도출에서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종합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 즉, 평가영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그리고 평가항목은 자치권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을, 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축소 여부를,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제약여부를,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여부를,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부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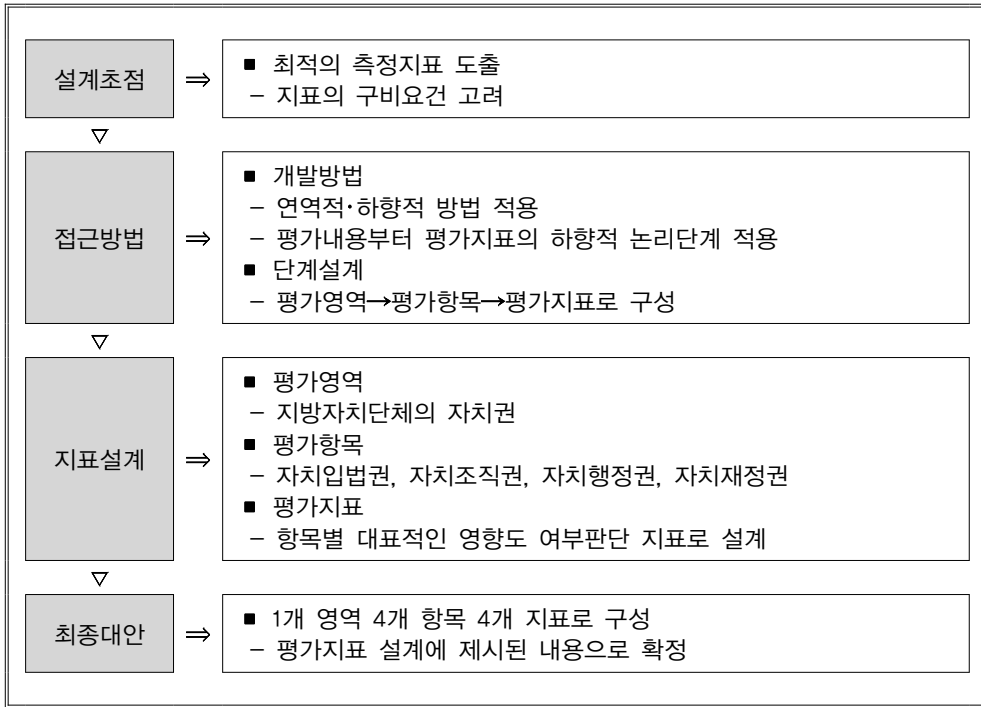
<표 5-7>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자치권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축소 여부
	자치조직권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제약여부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여부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부

4) 최종대안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일반적인 정책 또는 사업 평가와 달리 영향도의 여부판단에 초점을 두어 최종대안을 확정함
 - 즉,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논리적 단계를 전제로 평가항목별 대표적인 속성을 기초로 자치권의 저해를 판단하는 측정지표로 구성하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축소 여부를,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제약여부를,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여부를,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부로 함

<그림 5-8> 평가지표의 설계방안



4. 평가방법 설계

1) 설계초점

-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따라서 목적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한 설계초점임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 평가방법의 설계초점은 전술한 평가지표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임

2) 검토대안

(1) 제1안 : 자료심사

- 제1안은 해당 부처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적합여부를 심사를 방안임
 - 동 방안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해당 부처가 제시한 체크리스트의 자료를 평가주체가 평가지표별로 심사하여 부정적 영향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제2안 : 면담심사

- 제2안은 해당 부처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적합여부를 면담으로 심사하는 방안임
 - 동 방안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해당 부처의 담당자를 평가주체가 직접 면담을 통하여 평가지표별 부정적 영향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판단논거

(1) 평가지표 특성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개선의 논리구조를 적용하고 있음
 - 즉,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개선 필요성 및 개선조치를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해당 법령을 입안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이와 같은 평가지표의 특성을 감안하면, 자료심사의 과정을 통해서도 국가가 입안하는 법령안의 자치권 항목별 침해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임

(2) 기존제도 사례

- 기존의 유사제도 사례분석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9개 영향평가에서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즉, 기존의 9개 영향평가 모두가 해당 부처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대상으로 평가주체가 자료심사를 실시하여 부정적 영향도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조치를 수립토록 하고 있음

(3) 판단논거 종합

- 평가방법의 설계를 위한 2개의 대안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특성과 기존제도 사례를 적용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즉, 평가지표 특성과 기존제도 사례에 비추어 보면, 1안이 2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음
 - 다만, 2안은 1안과 동일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나, 이의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1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표 5-8> 평가방법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구분	1안	2안
평가지표 특성	3	1
기존제도 사례	3	1
종합	6	2

주 :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3, 2, 1로 표시.

4) 최종대안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방법은 전술한 평가지표 특성과 기존제도의 사례를 준거로 다음과 같이 설계함
 - 즉,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해당 부처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대상으로 평가주체가 자료심사를 통하여 평가항목별 부정적 영향도를 판단함
- 자료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기초하여 작성함

- 즉, 평가항목별 관련법령의 부정적 영향도의 유무와 개선 필요성 및 개선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임

<그림 5-9> 평가결과의 작성양식(예)

평가지표	해당여부	
1. 관련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관련조항 개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관련조항 개선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관련조항 유무
 ○ 해당조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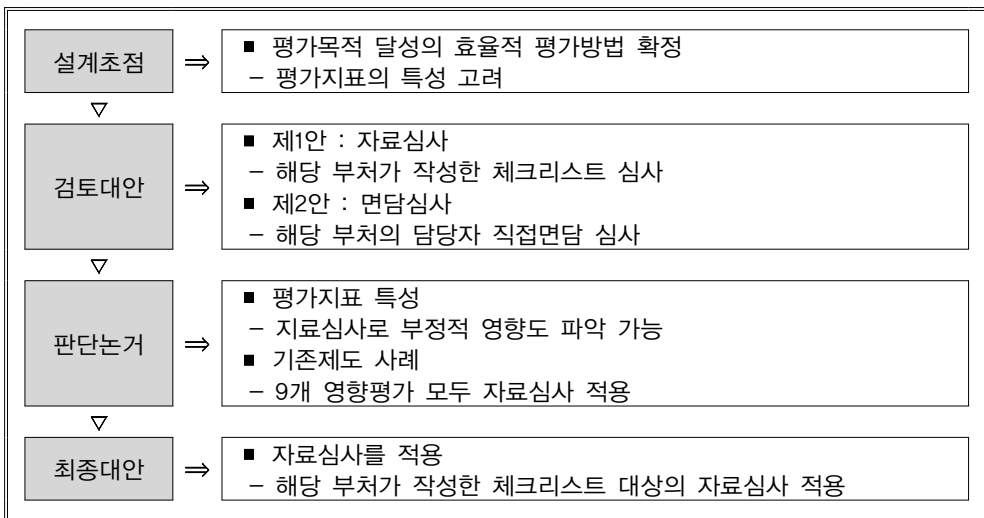
2.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 해당조항

3. 개선계획
 ○ 분석근거

 ○ 개선안

<그림 5-10> 평가방법의 설계방안



제3절 운영체제의 설계

1. 평가주체 설계

1) 설계초점

- 평가주체는 평가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평가를 관장하는 주관기관을 의미하며, 따라서 최적의 주관기관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한 설계초점임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 평가주체의 설계초점은 평가목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평가주체를 결정하는 것임
 - 다만, 평가주체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평가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객관성의 구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검토대안

(1) 제1안 : 행정안전부

- 제1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를 주관하는 주체로 행정안전부를 대안으로 설계하는 방안임
 - 동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지위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를 평가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임

(2) 제2안 : 법제처

- 제2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를 주관하는 주체로 법제처를 대안으로 설계하는 방안임
 - 동 방안은 국가의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령의 최종심사기관인 법제처를 평가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임

(3) 제3안 : (가칭)지방영향평가위원회

- 제3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를 주관하는 주체로 “(가칭)지

방영향평가위원”를 설치하는 방안임

- 동 방안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가칭)지방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임

3) 판단논거

(1) 업무 구비조건

- 평가주체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평가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내용과 업무의 연계성 및 전문성이 구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업무의 구비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가지나 법제처는 연계성과 전문성에서 모두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독립적인 평가기구로 “(가칭)지방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평가기능에 국한되므로 업무의 연계성은 매우 낮음

(2) 기존제도 사례

- 기존의 유사제도 사례분석에 따르면, 평가주체는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9개 영향평가에서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즉, 규제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영향평가는 해당업무를 소관하는 주무부처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고, 평가작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규제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규제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부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주체로 지정하고 있음

(3) 판단논거 종합

- 평가주체의 설계를 위한 3개의 대안을 대상으로 업무 구비조건과 기존제

도 사례를 적용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즉, 업무 구비조건과 기존제도 사례에 비추어 보면, 1안이 여타의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음

<표 5-9> 평가주체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구분	1안	2안	3안
업무 구비조건	3	1	2
기존제도 사례	3	1	1
종합	6	2	3

주 :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3, 2, 1로 표시.

4) 최종대안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주체는 전술한 업무 구비조건과 기존제도의 사례를 준거로 다음과 같이 설계함
 - 즉,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하되, 평가작업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치함
- 별도의 평가지원기구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함
 - 제1안은 행정안전부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제2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임
 - 제1안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평가수요가 많을 경우 외부위원들의 업무량 과다와 빈번한 회의개최에 따른 효율적 대응이 곤란하고, 제2안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전담하여 평가수요의 증감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나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가 곤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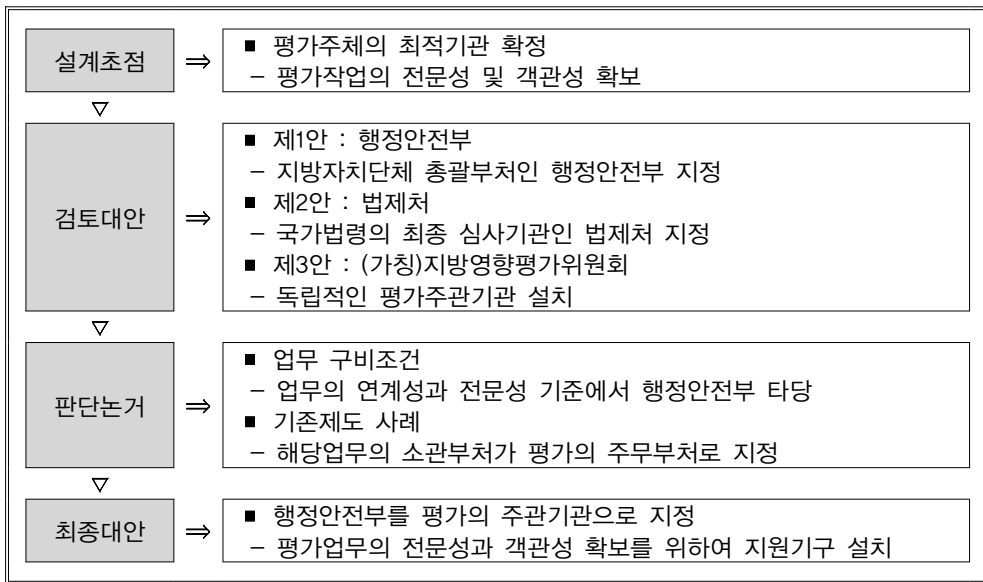
<표 5-10> 평가업무지원기구 설치방안

구 분	내 용
행정안전부 지원기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지방영향평가지원위원회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행정안전부 제2차관 - 위원 1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위원 :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지역발전국장 · 위촉직 위원 : 법률(3인), 행정(3인), 재정(3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1인),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1)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서의 심의 등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로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수요의 증가에 효율적 대응곤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평가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지방영향평가지원센터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1인 - 센터원 : 법률, 행정 및 재정 각 분야별 3인 이상의 인력확보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영향평가 제도연구 - 지방영향평가 심의 - 지방영향평가 관련업무 지원 등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수요의 증감에 탄력적 대응 확보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지위에 따른 대외적 신뢰도 확보곤란

- 다만, 현실적인 평가수요의 규모를 감안하면, 제2안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되,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다음과 같이 역할의 분담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가칭)지방영향평가”에 대한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지원기구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간의 역할분담은 정부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간의 역할분담 구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평가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평가를 요청하며 평가결과를 해당부처에 통지하여 법령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평가진을 구성하여 요청법령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합하는 것임

<그림 5-11> 평가주체의 설계방안



2. 평가절차 설계

1) 설계초점

- 평가절차는 평가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평가작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따라서 각 작업단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요한 설계초점임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 평가절차의 설계초점은 필요한 계의 도출과 이의 합리적 구성을 결정하는 것임

2) 검토대안

(1) 제1안 : 자체평가 배제

- 제1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를 전술한 평가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방안임
 - － 동 방안은 법령을 입안하는 개별부처는 평가과정에서 배제되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임

(2) 제2안 : 자체평가 포함

- 제2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앞서 개별부처의 자체평가를 선행단계로 포함하는 방안임
 - － 동 방안은 법령을 입안하는 개별부처가 선행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차적으로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것임

3) 판단논거

(1) 메타평가 특성

- 특정정책에 대한 평가절차를 1차와 2차로 구분하는 주요 논거는 메타평가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 － 일반적으로 메타평가는 1차 평가기관이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2차 평가기관은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이원적 평가구조의 형식을 가지며, 여기에서의 전제는 각각의 평가기관이 평가대상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1차 평가기관인 각 중앙부처가 소관법령의 제·개정에서 지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기관인 핵심사항에 대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메타평가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2) 기존제도 사례

- 기존의 유사제도 사례분석에 따르면, 자체평가의 선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절차를 보면, 이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다수의 영향평가는 자체평가를 배제하고 있으나, 규제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자체평가를 선행절차로 두고 있음
 - 자체평가를 선행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1차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작성되어 있고, 여타 평가와 달리 각 중앙부처의 소관법령의 제·개정이 대상으로 개별 중앙부처의 전문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규제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가칭)지방영향평가”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3) 판단논거 종합

- 평가절차의 설계를 위한 2개의 대안을 대상으로 메타평가의 특성과 기존제도의 사례를 적용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즉, 메타평가 특성과 기존제도 사례에 비추어 보면, 2안이 1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음

<표 5-11> 평가절차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구분	1안	2안
메타평가 특성	1	3
기존제도 사례	1	3
종합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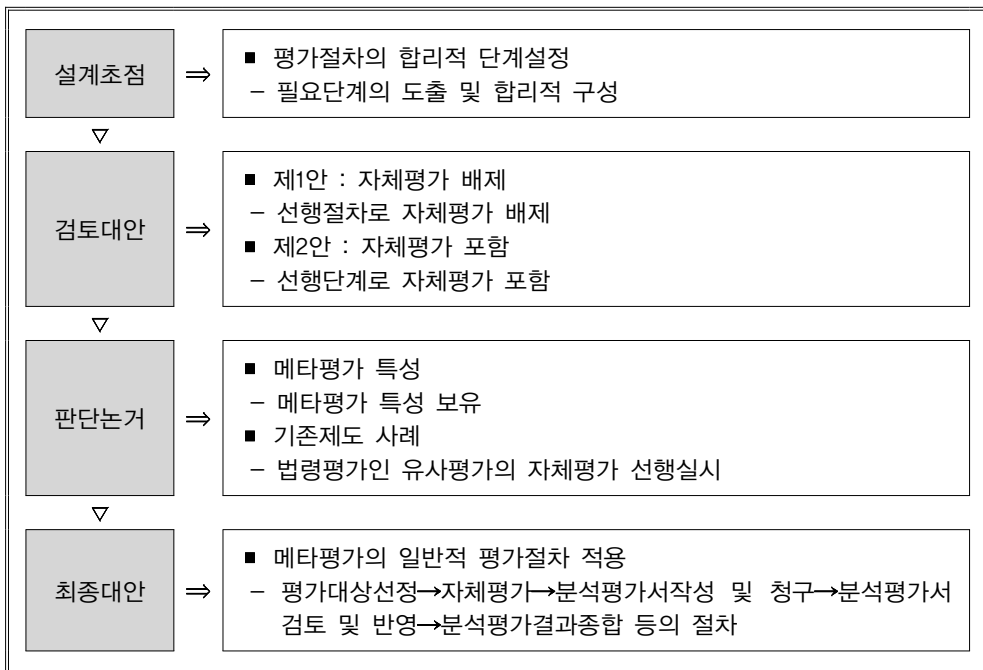
주 :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3, 2, 1로 표시.

4) 최종대안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절차는 전술한 메타평가 특성과 기존제도의 사례를 준거로 다음과 같이 설계함

- 즉,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메타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1차적으로 개별 중앙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2차적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로 하되, 일반적인 영향평가의 기본구조를 준용함
- 따라서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는 단일의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 즉, 평가대상선정→자체평가→분석평가서작성 및 청구→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분석평가결과종합 등의 절차를 거침
 - 다만, 핵심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에 대한 각 중앙부처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사결과의 미반영 법령은 법제처 심사를 유보하는 내용을 평가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12> 평가절차의 설계방안



<그림 5-13> 평가절차(안)의 예시

단계	해당기관	행정안전부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및 자체평가 ▽	체크리스트 작성 법안입안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의 선정	← 컨설팅·교육지원
▽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자체적평가 실시	← 컨설팅·교육지원
분석평가서 작성 ▽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부처협의 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컨설팅·교육지원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법제처 심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통보	← 해당기관에 부처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 결과종합 ▽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기관별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3. 근거법령 설계

1) 설계초점

- 근거법령은 평가시행에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를 의미하며,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평가에 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이 주요한 설계초점임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서 근거법령의 설계초점은 법적 기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임

2) 검토대안

(1) 제1안 : 지방자치법 개정

- 제1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 관한 근거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임
 - － 동 방안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가칭)지방영향평가”에 관한 제반내용을 반영하는 것임

(2) 제2안 : 독립 평가법의 제정

- 제2안은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에 관한 근거를 별도의 독립적 평가법의 제정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임
 - － 동 방안은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독립적인 평가법을 제정하여 “(가칭)지방영향평가”에 관한 제반내용을 반영하는 것임

3) 판단논거

(1) 정책 효과성

- “(가칭)지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의 유형에 따라 정책적 효과가 달라지고, 따라서 정책효과가 보다 높은 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전술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가칭)지방영향평가”에 관한 제반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명확히 확보되나 평가에 대한 대외적 인식은 크지 않으며, 독립 평가법의 제정은 “(가칭)지방영향평가”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일하나 대외적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 － 따라서 정책 효과성을 기준으로 보면, 전술한 대안 가운데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근거법령으로 제2안인 독립 평가법의 제정이 타당함

(2) 기존제도 사례

- 기존의 유사제도 사례분석에 따르면, 영향평가의 근거법령으로는 모두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됨
 - 첫째는 기술영향평가와 같이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해와 환경 및 인구 등의 영향평가와 같이 상호 유사성을 갖는 영향평가의 통합평가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셋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같이 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독립 평가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에 관련된 내용은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존사례에서 나타나는 법적 근거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해당시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제외한 다수의 평가가 독립 평가법의 유형을 보유하고 있음

(3) 판단논거 종합

- 근거법령의 설계를 위한 2개의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과 기존제도 사례를 적용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 즉, 정책 효과성과 기존제도 사례에 비추어 보면, 2안이 1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음
 - 제1안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기존법령의 개정이므로 추진절차는 용이하나 대외적 인식도 크지 않고, 독립 평가법의 제정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므로 추진절차는 어려우나 대외적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표 5-12> 근거법령 설계의 판단논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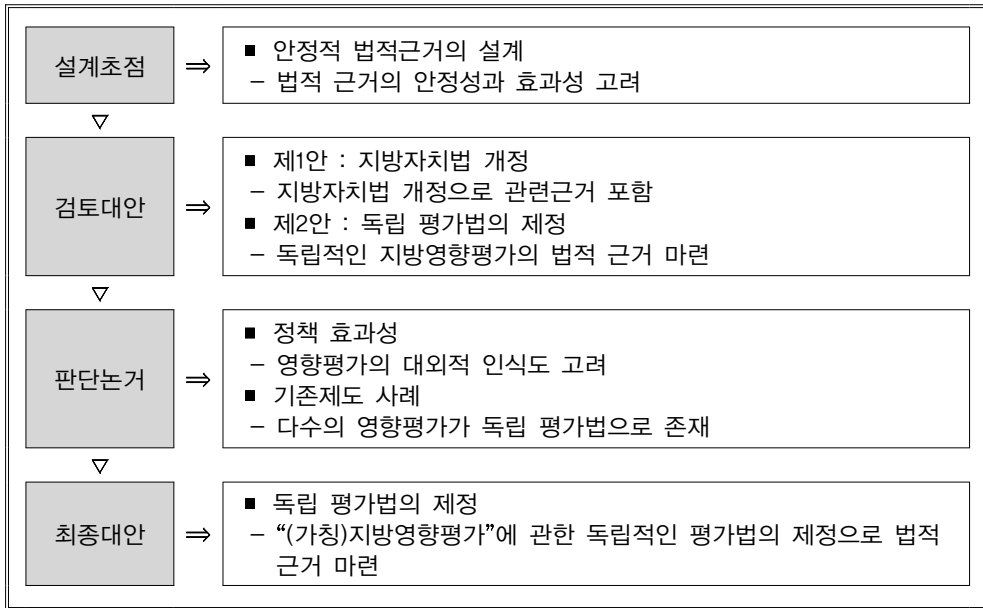
구분	1안	2안
정책 효과성	1	3
기존제도 사례	1	3
종합	2	6

주 : 타당성의 우선순위를 3, 2, 1로 표시.

4) 최종대안

-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 근거법령은 전술한 정책 효과성과 기존 제도의 사례를 준거로 다음과 같이 설계함
 - 즉, 국가정책의 “(가칭)지방영향평가”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되, 독립 평가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실행을 위한 제반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부령의 제정을 통해서 규정함

<그림 5-14> 근거법령의 설계방안



-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 평가법으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총칙과 분석평가의 실시,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등 3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p>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p> <p>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해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구 분	내 용
	<p>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p>	<p>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p> <p>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p>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00).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병진(2000). 정책학개론. 박영사.
- 나기산 외(1994). 정책분석론. 법문사.
- 노화준(2001). 정책평가론. 법문사.
- 박영도(2007).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1987). 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실태: 교통편.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 전재경(1998).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한국법제연구원.
- 정정길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박영사.
- 전형원외(2007). 정부평가의 이해와 실제. 대영문화사.
- 차의환(2002).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한울아카데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 법령·제도의 지방영향평가 도입방안.
- 한국행정연구원(2005).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개혁과 정책평가.
- 행정자치부(2012). 각종 영향평가제도 현황.
-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지방분권 영향평가 연구.

【부록】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제출현황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25-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5-02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진행중
25-03	0-2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진행중
25-04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건의	국방부	일부수용	진행중
25-05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5-06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25-07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01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02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24-03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수용	종결
24-04	택시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수용	지속관리
24-05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24-06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제정건의	국토부/기재부/ 행안부	일부수용	진행중
24-07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24-08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24-0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4-10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법제화 건의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24-11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24-12	지방소방재원 확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24-13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진행중
24-14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24-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16	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17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24-20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24-21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22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23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24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24-25	폐기물 처리시설 국보조비율 상향조정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24-26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24-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24-28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24-29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진행중
24-30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24-3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24-32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24-33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24-34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장기검토	진행중
24-35	농작물재해보험 국고지원을 상향조정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24-36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진행중
24-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24-38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24-39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24-4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4-41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24-42	온라인복권수수료 분쟁소송 전액 시도 배분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진행중
23-01	상수 전용램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환경부	일부수용	진행중
23-0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23-03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3-04	방범용 CCTV 설치 alc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경찰청/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23-05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23-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23-0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23-0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23-09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23-10	전문계고교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23-11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23-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23-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23-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23-15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소방방재청	장기검토	진행중
23-16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23-17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23-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수시-01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수시-02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수시-03	지방교부세 법정교부를 상향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수시-04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수시-05	자치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수시-06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수시-07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전액 자율집행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수시-08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통일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수시-09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정권 지방이양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수시-1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국가보훈처	수용곤란	지속관리
추가-01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추가-02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22-01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2-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22-03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22-04	지방채 차입선 확보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2-05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22-06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22-07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22-08	노후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22-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22-10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노동부	수용	종결
22-11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22-12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2-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진행중
22-14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22-15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진행중
22-16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22-17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진행중
22-1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종결
21-01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1-02	바이오디젤(BD20) 보급확대 방안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21-03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21-04	하수도사업 국비지원을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21-05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21-0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	보건복지가족부	일부수용	진행중
21-07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21-08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21-09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21-10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 확대	산림청	수용	종결
21-11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수용	종결
21-12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21-13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21-14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21-15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담기준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기검토	진행중
21-16	축사 등기 보전 인정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21-17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21-18	경관사업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21-19	도서의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21-20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수시-0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일부수용	진행중
수시-02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경찰청	일부수용	진행중
수시-03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수시-01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수시-02	빛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추가-0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일부수용	진행중
추가-0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추가-03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추가-04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추가-05	주택-택지관련 권한 지방 이양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추가-06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20-01	도시철도차량 사용연한 연장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20-02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20-03	중앙-시도 행정심판기능 통합 반대	국민권익위원회	수용	종결
20-04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진행중
20-05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20-06	요양보호사 업무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종결
20-07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 건의	여성가족부	수용	종결
20-08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종결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20-09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20-10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20-11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20-12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20-1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20-14	미분양주택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20-15	임업세제 개선 건의	산림청	장기검토	진행중
20-16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20-17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를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20-18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20-19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20-20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20-21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20-22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경찰청	수용곤란	진행중
20-23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20-24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수시-01	공공도서관 국고보조를 상향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수시-02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수시-0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17-01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국비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17-02	개별부담금의 정수급 배분율 조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17-03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를 현행 유지	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17-04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17-05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17-06	자치단체 인구수에 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건의
17-07	학교용지 공급가액 특례조항 확대적용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17-0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상 제도개선	기획예산처	미회신	진행중
17-09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17-10	동북아-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망 구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17-11	기업, 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종결
17-12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17-13	정부부시장, 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7-14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 폐지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17-1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17-16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용자금) 지원 건의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종결
17-17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책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17-18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17-19	남해안 고속화철도 건설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진행중
17-20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 조정 건의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17-21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17-22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7-23	어류육성양식장 및 전복육성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17-24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7-2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17-26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7-27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7-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17-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16-01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16-02	지방세 부과세/감면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6-0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16-04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6-05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16-06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진행중
16-07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16-08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09	서해철도(목포-군산) 건설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10	수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11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16-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16-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16-14	지방공단 자체사업 기능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16-15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환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16-16	특별행정기관 기능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16-1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16-18	고속국도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1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환경부	수용	진행중
16-20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16-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16-22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16-23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24	혁신, 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16-25	화력발전예 대한 지역개발과세 입법발의 촉구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6-26	국도건설 BTL 사업 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16-27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16-28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29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6-31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16-32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6-3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16-34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15-01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5-02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5-04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외교통상부	수용	종결
15-05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15-06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15-09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 국고보조 확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5-10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관련 세수보전대책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지속관리
15-1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5-12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15-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15-14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5-15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외교통상부	수용	지속관리
15-16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15-17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15-18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15-19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재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15-20	솔잎축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산림청	수용	종결
15-22	담수리권 확보 및 이익금 환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15-24	화력발전예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5-25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15-29	학교급식법 개정법을 재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15-30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5-34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환경부	수용	종결
15-36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5-37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15-38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15-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15-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추가-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추가-02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추가-03	하천법 개정(안) 관련 시, 도의견 반영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추가-04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추가-05	하수도법 개정법률(안) 수정 요구	환경부	수용	종결
추가-06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14-01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 법령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14-02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4-0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4-0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4-08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14-10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14-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림부	일부수용	종결
14-14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종결
14-15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중앙선관위	장기검토	종결
14-16	통신회선로 인상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14-1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14-18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14-19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14-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14-22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14-23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수용	종결
14-24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14-26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14-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14-2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종결
14-2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14-30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14-31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14-4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13-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도 수용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13-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13-04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사항
13-06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13-0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13-08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13-09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13-10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3-11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을 개정(안) 변경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13-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13-14	지역특화센터산업용전력 적용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13-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13-16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13-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13-19	기초생활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기검토	종결
13-20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13-2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13-22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13-27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추가-01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재정경제부	수용	종결
추가-0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수용	종결
추가-03	생태,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